
의용소방대 활성화 방안 연구모임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2022. 12. .



충청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의용소방대 활성화 방안 연구모임 연구 활동 결과 보고서

2022. 7. ~ 2022. 11.



충청남도의회

연구모임 결과보고서를 내면서

현대사회의 급속한 발전과 산업경제가 다양화, 첨단화됨에 따라 재난의 양상은 대형, 장기화되는 추세입니다. 그에 따른 민간자원 활용의 중요성과 인식이 대두되고 있으며, 재난의 양상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의용소방대의 역할은 점점 중요하고 다양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의용소방대의 임무와 역할을 분석하여 업무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연구모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의용소방대(volunteer fire)는 지역의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소방업무를 체계적으로 보조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자발적인 봉사단체 조직으로 최근 2020년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 강원도 고성산불 화재 등 수많은 크고 작은 재난 현장에서 오랫동안 소방공무원을 도와 지원활동과 지역 안전의 선봉적인 역할을 하여왔습니다

특히, 이번 연구모임은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약 5개월 동안 현직 의용소방대원들이 연구회원으로 직접 참여하고 충청남도 행정기관 관련 업무 담당자 및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회의 및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여기서 얻어진 의견과 토의 내용은 앞으로 관련 조례를 제·개정하는 등 제도적 보완과 활동실적 및 전문성을 가진 대원에게는 성과보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했고 결과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연구모임에 함께 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이번 연구모임에 좋은 의견들은 실제 현장에서 민·관 협력을 통해 발전된 정책으로 탄생 되기를 바라며, 의용소방대 조직역량 강화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작은 희망을 가져봅니다.

2022년 12월

신한철

충청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

충청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의용소방대 활성화 방안 연구모임 대표

목 차

1 연구모임 현황 및 계획

- ① 연구모임 등록신청서 3
- ② 연구모임 계획서 4
- ③ 연구모임 세부계획 5

2 연구모임 활동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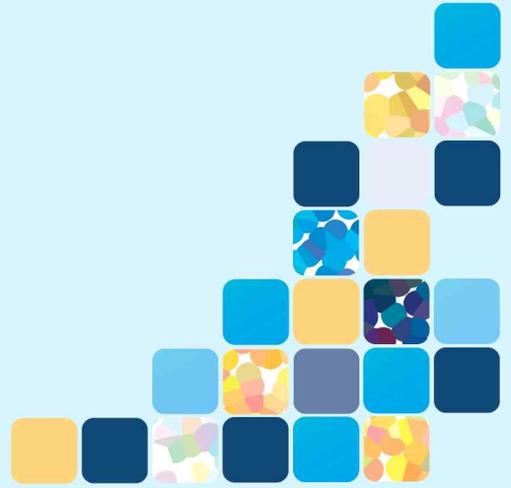
- ① 1차 회의 개요 및 회의자료 1 1
- ② 2차 회의 개요 및 회의자료 6 3
- ③ 3차 회의 개요 및 회의자료 8 6
- ④ 토론현황 및 관련사진 7 7
- ⑤ 언론 보도 8

3 연구모임 결과

- ① 목적 및 필요성 7 9
- ② 정책제언 9

4 연구모임 참고자료

- ① 위원명단 101
- ② 관련규정 102



1

연구모임 현황 및 사업계획

1 연구모임 현황 및 계획

① 연구모임 등록신청

『의원 연구모임 등록 신청서』

1. 모임명 : 의용소방대 활성화 방안 연구모임
2. 대표자 : 신한철 의원
3. 연구목적 : 각종 재난·재해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의용소방대원
을 양성하여 지역사회 민간자율 봉사단체로서의 위상 제고 및
임무와 역할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모색
4. 구성원

연번	구분	성명	소속 또는 상임위원회	서명날인	비고
1	대표	신한철	충청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	신한철	
2	회원	홍성현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홍성현	
3	회원	김도훈	충청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	김도훈	
4	회원	박정수	충청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박정수	
5	회원	강성기	천안시의원	강성기	
6	회원	김상식	소방본부 예방안전과장	김상식	
7	회원	류석만	충청남도의회용소방대 연합회장	류석만	
8	회원	박효숙	충청남도의회용소방대 여성회장	박효숙	
9	회원	박의호	천안동남소방서 병천남성대 대장	박의호	
10	회원	김종우	천안동남소방서 목천남성대 대장	김종우	
11	회원	이권재	천안동남소방서 동남의소방대 연합회장	이권재	
12	회원	정명희	천안동남소방서 동남여성대 대장	정명희	
13	회원	이재영	천안동남소방서 동남남성대 대원	이재영	
14	회원	문기식	천안동남소방서 동남남성대 총무반장	문기식	
15	회원	이완희	천안서북소방서 서북의소대 연합회장	이완희	
16	회원	박은숙	천안서북소방서 서북의소대 여성회장	박은숙	
17	회원	박병환	천안서북소방서 입장남성의소대 총무부장	박병환	
18	회원	민지영	천안북자여자중학교 운영위원	민지영	
19	회원	이강자	천안프라임어린이집 원장	이강자	
20	회원	나기영	천안동남소방서 동남의용소방대원	나기영	

「충청남도의회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라 충청남도의회의원 연구모임 등록을 신청합니다.

2022년 7월 일

의용소방대 활성화 방안 연구모임 대표의원 신한철

충청남도의회회장 귀하

② 연구모임 계획서

연구모임명		의용소방대 활성화 방안 연구모임
대표자		신한철 의원
연구내용	과제	- 의용소방대의 역할 분석을 통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연구 - 재난·재해 특성에 따른 의용소방대의 임무역할 및 편성 효율성에 대한 연구
	목적	- 각종 재난·재해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의용소방대원을 양성하여 지역사회 민간자율 봉사단체로서의 위상 제고 및 활성화 방안 모색
연구활동기간		2022. 7. ~ 2022. 11.(5개월)
연구방법·연구활동 내용 및 세부계획		「붙임」
연구활동비	소요액	4,000천원
	산출내역	「붙임」
기타사항		

※ 붙임 : 연구활동 세부계획서, 연구활동비 산출내역 각 1부

「충청남도의회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라 연구활동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22년 7월 일

의용소방대 활성화 방안 연구모임 대표의원 신한철

충청남도의회 의장 귀하

③ 연구모임 세부계획

『의용소방대 활성화 방안 연구모임』

- 의용소방대의 역할 분석을 통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연구
- 재난·재해 특성에 따른 의용소방대의 역할 및 편성 효율성에 대한 연구

1. 추진방향

- 각종 재난·재해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의용소방대원을 양성하여 지역사회 민간자율 봉사단체로서의 위상 제고
- 실현 가능한 결과도출을 위한 연구활동 및 연구성과를 시책에 반영하고 결과보고서 발간을 통한 정보공유

2. 연구개요

- 연구대상 : 의용소방대원 및 의용소방대 관련 정책
- 연구기간 : 2022. 7월 ~ 11월(5개월)
- 연구내용
 - 의용소방대의 역할 분석을 통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연구
 - 과제발굴을 위한 워크숍, 현장견학 등
 - 연구 결과보고서 발간, 배포
- 소요예산 : 4,000천원

3. 세부 연구계획

가. 연구활동 지원

- 개 요 : 의용소방대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

○ 내 용 : 연구모임 개최 및 활동비 지원

- 연구모임 구성, 등록, 정기모임

- 연구활동·조사·참석수당 등 비용 지원

○ 연 구 비 : 1,000천원

- 회의 참석(발제)수당, 식대, 다과, 현수막, 인쇄비 등

나. 현장견학 및 토론회 개최

○ 토론회(워크숍) : 연구모임 회원 및 관계 전문가 발제 토론 등 3회

○ 현장견학 : 연구모임 효율성 극대화 및 회원간 정보공유를 위한
현장 견학 병행 실시

다. 연구 보고서 발간·배포

○ 개 요 : 연구 사례집을 발간·배포하여 연구성과 공유

○ 시 기 : 연구모임 종료 후(12월)

○ 내 용 : 활동 실적, 문제점, 개선방안 발굴

○ 배 포 : 모임회원, 관련부서, 도의원 등

○ 제 작 : 50부(인쇄)

4. 추진일정(여건에 따라 변동가능)

○ 연구계획 수립 및 계획서 제출 : 2022년 7월 중

○ 1차 발족모임 개최 : 2022년 7월 중

○ 조사·연구 실시(토론회, 워크숍) : 2022년 7월 ~11월 중

○ 2차 모임 개최 : 2022년 8월 중

○ 현장방문 실시 : 2022년 7월~9월 중

○ 3차 모임 개최 : 2022년 10월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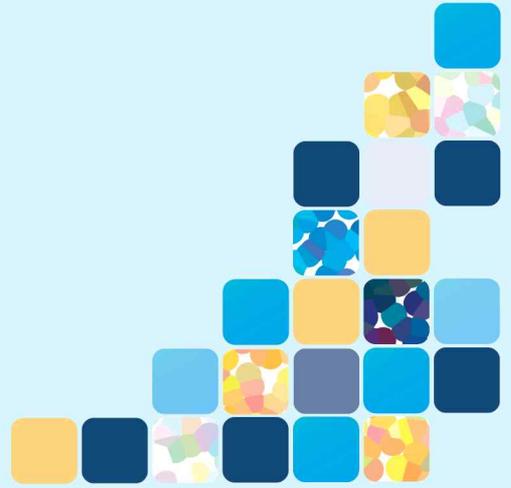
- 4차 모임 개최 : 2022년 11월 중
- 연구보고서 발간·배포 : 2022년 12월 중

5. 기대효과

- 재난·재해 특성에 따른 의용소방대의 역할 및 편성 효율화에 기여
- 의용소방대 관련 법률 및 조례 제·개정 시 방향 설정 근거

6. 연구활동비 산출내역

구 분	소요액 (천원)	산 출 기 초 (운영상 변동가능)
계	4,000	
연구모임활동비	1,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모임 발족 및 토론회 개최 등 - 참석수당 등 : 250,000원 × 4회 ※ 수당 지급 불가 대상 미지급
현장방문 및 토론회·워크숍개최	2,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방문 및 토론회, 워크숍 등 - 1,000,000원 × 2회 = 2,000,000원
결과보고서 제작	1,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론 및 연구과제 결과보고서 발간(인쇄) - 1회 × 1,000,000원



2

연구모임 활동현황

2 연구모임 활동현황

1 1차회의 개요 및 회의자료

1 개 요

- 일 시 : 2022. 7. 28.(목) 10:30 ~
- 장 소 : 충청남도 천안동남소방서 대회의실(4층)
- 대 상 : 연구모임 회원 및 관계자 20명
- 내 용 : 발족식 및 1차 회의(발제 및 토론)

「 의용소방대 활성화를 위한 연구 」

※ 신한철 대표 의원

2 추진계획

1 진행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10:30 ~ 10:35	05' · 개회, 연구모임 설명	전문위원
10:35 ~ 10:40	05' · 대표 의원 인사말	대표의원
10:40 ~ 10:55	15' · 회원 소개 및 인사	"
10:55 ~ 11:05	10' · 모임 관련 토의	모임일정 안내 토의
11:05 ~ 11:50	45' · 발제 및 토론	발제발표 및 토론
11:50	· 폐회	대표의원

※ 발제 : “의용소방대 활성화 방안” 신한철 의원

나. 회의자료



의용소방대 업무현황 및 활성화 방안

충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신한철 의원

의용소방대 업무현황 및 활성화 방안



충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신한철 의원

의용소방대 발전사

의용소방대의 태동

- 을사보호조약 후 개항지 일본 거류민들이 재산 보호를 위해 의용소방조 조직
- 경성에 1889년(명치 22년) 소방펌프 1대로 소방조를 설치한 것이 한국내 일본인 소방조 효시



일제강점기 이후의 의용소방대

- 일제 강점기 : 총무부령 소방대규정
- 1938.11.18. 방공법으로 소방조와 수방단 설치
- 1939.07.03. 조선총독부령 제104호 경방단 규칙 제정으로 소방단과 수방단이 해체되어 경방단으로 출범 (도지사 감독하에 경찰서장 지휘)



의용소방대 조직관련 변천사

1958.03.11. (법률 제485호)	소방법에 설치규정 삽입 - 제4장 잡칙(보칙) 제40조~제46조례
1958.08.18.	구·시·읍 단위로 설치 입법 - 총무부, 방호부, 구호부, 훈련부의 4부
1993.12.27. (법률 제4612호)	의용소방대원의 근무 규정으로 변경 - 수당지급의 근거 마련
2008.01 (법률 제8844호)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 재난관리를 위한 자율적 봉사활동의 효율적 운영
2014.7.29. (법률 제12344호)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의용소방대 임명권 변천사

1986년이전	소방서장, 읍·면장이 임용
1986.12.26	소방서장 또는 읍면장 추천으로 시장·군수가 임명
1991.12.17	소방서장 또는 군수 추천으로 시·도지사 임명
1994.02.08	시 지역은 소방서장 추천 시·도지사가 임명 군 지역은 읍·면장 추천 군수가 임명
2005.05.16	시·군 구분 없이 소방서장 추천 시·도지사 임명 - 표준조례안에서 군 지역도 시·도지사가 임용토록 개정 표준조례안에 의해 각 시·도별 조례개정을 추진
2014.1.28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 '14.7.29. 법률시행으로 의용소방대 임명권 통일 - 대장, 부대장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가 임명 - 대원은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임명

의용소방대 관련 법률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법률** : 제5장 제22조로 구성
 - 총칙, 임명·해임 및 조직, 복무와 교육훈련, 경비 및 재해보상, 전국 의용소방대연합회 설립 등
- **시행규칙** : 제5장 제25조로 구성
 - 총칙, 임명 및 조직, 복무와 교육훈련, 경비 및 재해보상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등
- **시·도 조례** :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조례 등

의용소방대 관련 법률

경비 및 재해보상

- 의소대 운영과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 : 해당 시·도지사가 부담
 -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가능
- **소집수당** : 제7조 임무수행, 예산의 범위에서 소집수당을 지급
 - 수당지급 방법 등 필요사항 시·도 조례로 정함
 - 지방 소방위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규칙)
 - 1시간 단위 계산, 1일 8시간 초과 금지, 전담의용소방대원, 특별재난지역 선포된 지역에서 제7조 임무수행 시 1일 8시간 초과 지급 가능(규칙)
- **활동비 지원** :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제7조 임무수행, 그 임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가능

의용소방대 관련 법률

의용소방대의 임무(제7조)-소방업무의 보조

-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의 보조
- 구조·구급 업무의 보조
-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및 구호업무의 보조
- 화재예방업무의 보조
-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제13조)으로 정하는 업무*

* 집회, 공연 등 각종 행사장의 안전을 위한 지원활동

주민생활의 안전을 위한 지원활동

그 밖에 화재예방 홍보 등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의용소방대 관련 법률

경비 및 재해보상

- **재해보상** : 제7조 임무수행 또는 제13조에 따른 교육·훈련
 - 질병, 부상, 사망 →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
 - 요양보상, 장애보상, 장제보상, 유족보상
 - 재해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 별표 8
 - 재해보상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도조례

최초 의용소방대 순직 사례



사건일자

1945년 11월 30일 낮 12시경

사건장소

군산시 경마장
(現 군산시 경장동 팔마광장 부근)

발생개요

- 일본은 봄과 가을, 축제의 일환으로 경마를 즐겼으며 이를 위해 군산지역에도 경마장을 만들
- 해방된 이후 미군이 들어오면서 부지가 넓은 경마장 마굿간에 폭발물을 보관함
- 미군들이 모닥불을 피우다 화재 발생
- ⇒ 연이어 폭발이 일어나며 현장에서 포탄을 외부로 반출하던 의용소방대원 9명 순직

최초 의용소방대 순직 사례



피해규모

- 사망 : 42명
(미군헌병 23명, 소방경찰 7명, 민간인 3명, **의용소방대원 9명**)
- 부상 : 1천여명
- 건물전파 177동, 이재민 600여명
- 재산피해 : 3천2백6십여 만원
- 소방역사 상 의용소방대원 순직사고 중 전국 최초이며, 그 피해 또한 가장 큰 것으로 기록됨

재해보상금 지급 사례

구미 불산 누출 사고

사건개요

- 장 소 : 구미4공단 내 (주)휴브글로벌(LCD 액정세척제 제조)
- 일 시 : 2012. 9. 27.(목) 15:43 ~ 23:30
- 원 인 : 불산 적재탱크(20톤)에서 공장 가공저장탱크로 옮기던 중 작업자 실수로 밸브가 열려, 기체상태로 확산
- 동원 : 인원 407명(의소대 52), 장비 36대



건강검진 및 진료현황

- 검진인원 : 48명(구미의용·여성소방대원)
- 진료병원 : 2개소(순천향대학교부속병원, 구미차병원)
- 진료기간 : '14. 9. 28 ~ 12. 13.
- 진료내용 : 호흡기·혈액·폐기능·시력검사 등



재해보상금 지급

- 근 거 : 경상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 제25조 및 제26조
- 인 원 : 48명
- 금 액 : 2,627,920원(1인당 평균 54,700원)
- 지급일자 : 2013. 1. 30.

의용소방대의 정의

	일반의용소방대	전담의용소방대	전문의용소방대
설치목적	재난현장에서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활동과 화재예방활동에 관한 업무보조(업무보조)	소방기관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지역에서 화재진압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화재 등 위급한 상황 발생시 소방활동(업무주체)	지역특수성에 따라 소방업무 관련 전문자격 소유자 등으로 구성하여 재난현장에서 소방활동(업무보조)
교육훈련	연24시간(월2시간)	월3시간	연24시간(월2시간)
보유장비	특별히 지원장비 없음	소방청사, 소방차(무상대여) 등	의용소방대원 개인장비 활용
자격조건	특별한 자격조건 없음	대형운전면허(운전원)	수난, 산악, 자격증 등
설치장소	도시읍면	소방관서 미설치 지역 나 홀로근무 1인 지역대	소방관련 자격경력자로 편성
주요활동	화재예방 및 봉사활동	화재현장 출동	수난, 산악 등 특수분야
근무방법	생업종사 중 재난발생시 출동	청사 상주하며 재난발생시 출동	생업종사 중 재난발생시 출동
수당지급	1일 최대 8시간 지급 1시간당 12,119원	1일 최대 8시간 초과 지급 * 특별재난지역 선포	1일 최대 8시간 지급 1시간당 12,119원

의용소방대의 정의

	명칭	구성	역할
남성 의용소방대	○○소방서 ○○남성의용소방대	남성	재난현장에서 화재진압, 구조·구급, 화재예방 및 홍보활동, 각종 소방활동에 관한 업무보조
여성 의용소방대	○○소방서 ○○여성의용소방대	여성	재난현장에서 화재진압, 구조·구급, 화재예방 및 홍보활동, 각종 소방활동에 관한 업무보조
혼성 의용소방대	○○소방서 ○○의용소방대	남성 여성	재난현장에서 화재진압, 구조·구급, 화재예방 및 홍보활동, 각종 소방활동에 관한 업무보조(관할구역 인구감소 등 지역여건에 따라 조직)
지역 의용소방대	○○소방서 ○○의용소방대 ○○지역대	남성,여성 또는 혼성	재난현장에서 화재진압, 구조·구급, 화재예방 및 홍보활동, 각종 소방활동에 관한 업무보조
전문 의용소방대	○○소방서 ○○전문의용소방대	남성,여성 또는 혼성	산악, 하천 등 지역특수성에 따라 소방업무 관련 전문자격 소유자 등으로 구성하여 재난현장 등에서 소방활동
전담 의용소방대	○○소방서 ○○전담의용소방대	남성,여성 또는 혼성	화재진압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화재 등 위급한 상황 발생시 소방활동

의용소방대 역할(제7조)

소방보조 조직의 역할

화재현장 출동	비상근으로 화재예방활동 및 진압활동의 소방업무
구조·구급현장 지원활동	소방활동 영역이 단순한 화재진압과 예방활동에서 구조·구급활동까지 확대되면서 소방수요 증가
재난현장 지원활동	재난유형의 다양화호, 복잡화, 대형화함에 따라서 민간자원봉사단체의 활용성이 날로 증대



의용소방대 역할

지역봉사자의 역할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

사회복지시설의 거동불편 노인 목욕봉사 활동 등

농어촌 일손 돕기
지원활동

수확철, 자연재해 등에 따른 농작물 피해발생시
참여하는 봉사활동

지역 행사도우미
지원활동

지방자치단체의 글로벌화 추진으로 지역에 다양한
행사 유치



의용소방대 역할

지역 재난관리자의 역할

재난 예방
홍보활동

주민대응절차 등을 홍보하면서 재난에 대한 사전 예방활동

재난 예상지역
순찰활동

하절기, 동절기에 자연재해가 예상되는 위험지역 순찰활동

재난대응
지원활동

재해현장 복구인력이나 대응에 필요한 지원을
지역 의용소방대가 담당



의용소방대 역할

다문화 전문의용소방대

사회통합적
안전시책 추진

- 재난환경과 시대변화에 적합한 다문화 자율안전체제 강화
- 공공서비스 참여를 통한 내·외국인의 사회통합적 안전시책 추진

더불어 살아가는
안전사회 조성

- 언어 및 문화 차이로 인한 소외감 해소와 더불어 살아가는 안전사회 조성

사회공헌도 및
자긍심 고취

- 우리 사회의 당연한 구성원으로서 지역방재의 중심적 역할수행으로 사회공헌도 및 자긍심 고취



의용소방대원 복제

복장의 종류

제복



모자



의용소방대원 복제

복장의 종류

부착물

						
직위표장	모자표장	지휘장	소매표장	배지	직위표	가슴표장

부속물

				
넥타이	넥타이핀	요대, 버클	단추	이름표

의용소방대원 직위표 및 가슴표장

의용소방대원 직위

전국의용소방대 연합회장	
시도의용소방대 연합회장	
시군의용소방대 연합회장	
의용소방대장	
지대장부대장	
부장	
반장	

가슴표장

21년 이상 근무	
15년이상 20년미만 근무	
10년이상 15년미만 근무	
5년이상 10년미만 근무	
입대후 5년미만 근무	

의용소방대 부착물

의용소방대 상징물 새매



- 평상시에는 생활전선에서 예방·경계하지만, 항상 가슴에 햇불을 들고 있어, 유사시에는 재난현장에 언제든지 달려가 희생과 봉사를 하는 누구에게나 태양처럼 밝고 희망찬 의용소방대를 상징
- 전체 형상이 V자로 언제나 승리하는 조직을 의미

지휘장 (무궁화, 관창, 햇불, 지휘봉, 방패모양)



- 재난현장에서 관창을 들고 용감하게 활동하여 나라와 국민을 지키는 파수꾼

의용소방대표지장 (해태두상, 햇불)



- 소방의 또다른 표상인 재난을 막아주는 상상의 동물 해태와 햇불을 형상화하고 전체적으로 역삼각형 구도(기동복, 방한복 소매상단에 부착)

2. 2022년 충남 의용소방대 현황

378개대 10,580명

구분	계	남성대				여성대	혼성대			
		소계	일반대	전담대	전문대	일반대	소계	일반대	전담대	전문대
대수	378	224	140	79	5	149	5	2	1	2
정원	10,580	6810	4460	2250	100	3630	140	70	30	40

3. 의용소방대 활성화

3-1. 대국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전문가 양성 현황 (단위:명)

구분	계	생활안전강사	심폐소생술강사	심리상담사
현직 대원	905	283	411	211
양성 인원 (2015 ~ 2021)	1,083	344	508	231

3-2. 벌집제거·동물포획 등 비응급신고에 대한 생활안전전담대 운영

[2021. 12. 31.기준]

구분	계	벌집제거	위해동물	고드름제거	산악구조	실종자	기타
계(회)	1,879	1,771	15	0	1	83	9

3. 의용소방대 활성화

3-4. 전통시장 의용소방대 확대

- 시장 상가번영회 소속 상인을 의소대로 영입

평상시	자체교육, 홍보, 훈련, 소방시설 점검 등
화재시	초기대응, 소방대 화재진압 등 소방활동 보조

구분	의용소방대 명	정원 [㉠]	현원 [㉡]	발대일자
계	4	80	76	
시장	공주소방서 산성시장전문의용소방대	20	18	2014.09.17.
	보령소방서 대천전통시장전문의용소방대	20	19	2015.12.15.
	아산소방서 온양온천시장전문의용소방대	20	19	2016.09.08.
	서산소방서 동부시장전문의용소방대	20	20	2015.11.30.

4. 주요행사

- 2022년 의용소방대 - 소방기술경연대회 및 화합 한마당 행사 개최 계획

I 행사개요

- (일시/장소) 2022. 6. 10.(금) 10:00 ~ 16:00 / 보령종합체육관
- (참석인원) 1,060명(내빈 15명, 의용소방대원 885명 소방공무원 115명 기타 45명)
- (주요내빈) 도지사, 도의장, 보령시장, 국회의원, 소방본부장, 도의원, 시의원 등
- (행사내용) 개회식, 기술경연대회, 초청가수공연, 시상식, 경품추첨 등



4. 주요행사

제1회 「의용소방대의 날」 행사 결과보고

I 행사개요

- (일시/장소) '22. 4. 6.(수) / 14:30~16:30 / 도청 문예회관 대강당
- (참석인원) 294명(내빈 8, 의용소방대원 235, 소방공무원 41, 기타 10)
- (주요내빈) 부지사, 교육감,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 등
- (행사내용) 식전행사, 유공자 포상, 표창, 축사, 기념촬영, 식후행사 등



4. 주요행사

2021년 전국의용소방대 강의경연대회 결과 일림

□ 대회개요

- 일 시 : 2021.11.23.(화) 10:30 ~ 17:10
- 장 소 : ㈜엑스코(대구 북구 엑스코로 10) 306호(심폐), 324호(생활)
- 인 원 : 103명(소방청 2, 시·도 95, 심사위원 6)
- 내 용 : 전국의용소방대 생활안전·심폐소생술강사 강의경연대회
- 시상방법 : 우승 시·도 상장 등 등기우편 배송(시·도 자체 시상)
- 소방청장상 57점(생활안전강사 19점, 심폐소생술 38점), 부상(손목시계) 57점



5. 활동사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감지기, 소화기)



5. 활동사진

화목보일러 화재안전 점검



5. 활동사진

어린이 화재안전 교육



5. 활동사진

제설 작업



5. 활동사진

화재현장 교통 통제



강원 동해안지역 산불

산불개요

구 분	고성 · 속초	강릉 · 동해	인 제
발생일시	4.4.(목) 19:17	4.4.(목) 23:46	4.4.(목) 14:45
장 소	강원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일성콘도 인근)	강원 강릉시 옥계면 남양리 958	강원 인제군 남면 남전리 503-2
발생원인	조사 중 ※ 개폐기 내 전선 스파크(추정)	조사 중	조사 중
피해면적	700ha(잠정)	714.8ha(잠정)	342.2ha(잠정)
진화일시	4.5.(금) 08:15	4.5.(금) 16:54	4.6.(토) 12:00

※ (인명피해) 사망2, 부상1 / (이재민) 4개 시군 552세대 1,215명 / (재산피해) 산림 1,757ha, 시설 4,768건

강원 동해안지역 산불

산불 확대요인 및 시사점

● 확대요인

- 봄철 건조한 날씨에 강풍까지 겹쳐 불이 급속도로 확대
- 민가와 시설물이 산림과 연접하여 건축물이 쉽게 연소
- 마른 낙엽 등의 화열·농연 및 험한 산세로 소방차 접근 곤란



※ 강풍(양간지풍) 생성 원리 : 봄철 서쪽에서 부는 바람이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발생

강원 동해안지역 산불

주요 현장활동 상황

- **화재진압** : 유관기관 등 가용 소방력 최대 동원 조기 화재진압 주력
 - 인명피해 방지 및 민가 등 시설물 보호 최우선 주력
 - 주거 밀집지 및 주유소(34), 가스충전소(6) 등 취약지역 방어선 구축

< 주요 시설 방어선 구축 피해 방호 : 67개소 >

- ◆ 장애인학교 1개소, 학교 6개소, 산악박물관 등 공공시설 10개소, 군부대탄약 시설 1개소, 콘도 8개소, 주유소 34개소, 가스충전소 6개소, 교도소 신축건



강원 동해안지역 산불

주요 현장활동 상황

- **인명대피** : 산불예상경로 파악, 주민 등 신속대피(4,143명)로 피해 최소화

지역	고성	속초
계	11개소 2,556명	6개소 1,587명
대피소	아야진초교 450, 동광중 500, 간성읍 사무소 76, 고성생활체육관 150, 고성종합체육관 1,270, 고성중고 25, 기타 85	청소년수련관 102, 학생체육관 300, 교동초 600, 온정초 60, 예은요양병원 150, 속초시청 80, 중앙교회 25, 감리교회 120, 동명성당 50, 혜랑중 50, 속초초교 50



강원 동해안지역 산불

주요 현장활동 상황

• 의용소방대 활동

- 화재진압 등 소방활동 보조, 교통통제
- 주민대피 안내 및 활동
- 시·도 동원 소방력 화재현장 안내
- 현장활동 소방력 급식 및 간식 제고 등



강원 동해안지역 산불

산림-소방 간 공동대응 강화

- 산림청과 정보공유 및 대응 강화 → 산불상황 및 지원 전문인력 확충
- 대형헬기 보강 및 소방차 펌프 성능개선 추진
- 산림인접지역 초기 산불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기반 구축
- 산림-소방 간 산불방지 능력 제고
- 민간 진화자원(의원소방대) 적극 활용 시스템 구축
 - 화재진압 전문교육 이수, 해당 지역의 지리 및 특성에 익숙한 의소대 활용
산불감시 및 진화인력으로 활용
 - 의용소방대 동원 시 산불진압장비(등짐펌프 등) 현장지원체계 구축

의용소방대 관련 법률 개정 사항

의용소방의 날 제정과 운영규정 마련(안 제2조의2 신설)

- 국민의 안전의식과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의용소방대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알리기 위하여 매년 3월 19일*을 의용소방의 날로 정함

* 의용소방대가 처음 소방법에 규정된 1958. 3. 11과 119의 의미를 뜻하는 날

의용소방대원의 해임요건 완화(안 제4조제1항제2호)

- 특·광역시 또는 시에 거주하는 의용소방대원이 관할 구역 외로 이주하더라도 소집 등 대원으로서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관할 소방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임요건에서 제외

의용소방대 발전방향

운영관리 측면

조직활동의 기본이념 명확화

의용소방대 설치 기본이념을 명백히 설정하고 소방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인력이 의용소방대원으로 가입 할 수 있도록 목표와 명분을 명확화

대원의 전문성 강화

소방관련 자격증 소지자가 매우 저조하여 초기 재난발생 시 대응활동에 한계가 노출되고 있어 전문화를 위한 교육·훈련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조직운영의 소프트화

획일화된 조직구성으로 관 주도 조직을 탈피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순수 봉사조직으로 변화 필요

활동에 대한 보상확대

시·도의 재정여건으로 지역별로 다른 보상체제로 인하여 의용소방대원 사기저하

대중적 홍보의 강화

의용소방대원이 갖는 사명감과 의무감이 차츰 약화되어 가면서 의용소방대의 존립자체에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어 지역민들에 대한 중요활동사항 대국민 홍보 강화

감사합니다



② 2차회의 개요 및 회의자료

1 개 요

- 일 시 : 2022. 10. 7(금). 10:00 ~
- 장 소 : 충청남도천안서북소방서 대회의실(3층)
- 대 상 : 연구모임 회원 및 관계자 20명
- 내 용 : 2차 회의(1차 회의내용 개선방안 검토 등)
- “의용소방대 활성화를 위한 연구”

2 세부 추진계획

① 2차 회의(안)

시 간	내 용	비 고
10:00 ~ 10:05	05' · 개회, 연구모임 설명	전문위원
10:05 ~ 10:10	05' · 대표 의원 인사말	대표의원
10:10 ~ 10:20	10' · 회원 소개 및 인사	"
10:20 ~ 11:40	80' · 모임 관련 토의	활성화 방안 토의 (1차 회의내용 검토 등)
11:40	· 폐회	대표의원
※ 1차 회의(내용) 검토 : 소방본부 예방안전과장 김상식		

※ 회의는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나. 회의자료

○ 발언회원	도의원	○ 작성 기준일	2022. 9. 30. 현재
	김도훈	○ 작성 부서	예방안전과

발언내용

▶ 의용소방대원들이 각종 출동과 교육훈련으로 지급되는 수당 및 자녀장학금제도 등 현실적 여건에 부합되는지 검토

■ 현실적 여건 부합 검토

- 의용소방대 소집수당은 1인당 연 60시간 반영되어 전국 최다 시간을 지급하고 있으며,
- 자녀장학금의 경우 도내 고교 무상교육 실시에 따라 공납금을 장학금으로 지급 곤란하여 정액을 학기별(상·하반기)로 나누어 지급하고 있음
- 금액이 다소 적어 실질적 경제적 지원이 미흡하다는 불만이 제기될 수 있으나 많은 대원의 자녀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향후 소집수당 및 자녀장학금 증액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음

□ 의용소방대 소집수당 지급현황

- (지급근거)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 (지급시간) 1일 8시간 이하(전담의용소방대, 특별재난지역 임무수행 8시간 초과 지급)
- (지급시간) 2022년 소방위 시간외근무수당 단가 12,119원
 - * 전국 소집수당 평균 지급시간 25시간(최다 충남 60시간, 최소 경남 11시간)
 - ** 1위 충남 60시간, 2위 세종 59시간, 3위 울산·제주 40시간

□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현황

- (지급근거) 「충청남도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 (장학생 자격) 2년 이상 근속한 대원의 자녀 또는 유자녀로서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
- (장학금 지급액) 고등학생 50만원, 대학생 100만원
 - * 도내 고교 무상교육에 따른 자녀장학금 지급 기준 변경(2019년)

○ 발언회원	도 연합회장	○ 작성 기준일	2022. 9. 30. 현재
	류석만	○ 작성 부서	예방안전과

발언내용

- ▶ 의용소방대원 입대 및 해임등 관련 법규 개정이 필요, 고령화사회 진입관련 연령제한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 의용소방대 명예를 실추하는 일부대원의 해임제도 개선

■ 연령제한 검토

- 농어촌 지역 고령화 추세로 인한 인원 부족으로 의용소방대원의 정년 연장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이나 정년연장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한 상황으로 현재 정년연장을 위해 소방청에서 의견 수렴중에 있음

※ (정년근거)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 해임제도 개선

- 의용소방대원 해임에 관한 규정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한 상황으로 의용소방대 명예를 실추하는 대원의 해임에 관한 규정이 법률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방청에 건의하겠음

※ (해임근거)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 발언회원	도 여성회장	○ 작성 기준일	2022. 9. 30. 현재
	박효숙	○ 작성 부서	예방안전과

발언내용

- ▶ 의용소방대 운영비 책정이 부족함
- ▶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서 적극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함

■ 운영비 책정 부족 및 시·군 적극적 예산편성

- 현재 의용소방대지원경비는 총 56백만원으로 각 소방서 의용소방대 수에 따라 재배정된 상태임
- 의용소방대 운영비가 다소 부족하다는 것을 본부에서도 인지하고 있으며 향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최대한 증액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 또한, 시·군에서도 의용소방대 관련 예산이 많이 편성되도록 각 시·군 담당부서와 협의 하겠음

※ 소방서별 의용소방대지원경비 재배정 현황

연번	배정 관서	배정 기준(대)	재배정액	비고
	합계	378	56,000,000	
1	천안동남	22	3,330,000	
2	천안서북	15	2,810,000	
3	공주	22	3,330,000	
4	보령	39	4,970,000	
5	아산	29	4,030,000	
6	서산	23	3,430,000	
7	논산	24	3,530,000	
8	계룡	4	1,470,000	
9	당진	26	3,730,000	
10	금산	24	3,530,000	
11	부여	35	4,570,000	
12	서천	27	3,830,000	
13	청양	21	3,170,000	
14	홍성	23	3,430,000	
15	예산	28	3,930,000	
16	태안	16	2,910,000	

○ 발언회원	동남연합회장	○ 작성 기준일	2022. 9. 30. 현재
	이권재	○ 작성 부서	예방안전과

발언내용

- ▶ 지역특성을 감안한 출동, 진압장비 배치, 피복개선 필요함
- ▶ 협소하고 낮은 소방청사 중 신축이 시급한 실정
- ▶ 동남구 신부동 주변 119안전센터 신설로 사각지대 해소

■ 출동, 진압장비 배치, 피복개선

- 현재 전담의용소방대를 중심으로 출동 및 진압장비를 배치·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장비가 배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피복은 현재 소방청에서 대원 현장활동 중 안전성을 최우선 고려하여 피복의 재질, 규격 개선 및 우천활동복을 추가하는 등 「의용소방대원 복제 세척」을 개정 계획 중에 있음
- 의용소방대원들의 원활한 현장활동 수행 및 자긍심을 고취 시킬 수 있도록 각 소방서(연합회) 의견을 받아 소방청에 지속적으로 건의 하겠음

■ 의용소방대 노후청사 개선

- 의용소방대 청사는 도비보조 사업으로 시·군의 협조를 받아 순차적으로 노후청사를 개선해 나가겠음

■ 신부동 119안전센터 신설

- 신부동 지역은 도시 확대로 소방수요가 증대 추세에 있음
- 현재 계획중인 「충남 소방력 보강 5개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 하겠음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의용소방대법)

[시행 2021. 6. 9.] [법률 제17576호, 2020. 12. 8., 일부개정]



소방청(화재대응조사과) 044-205-748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소방업무를 체계적으로 보조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용소방대의 설치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소방서장은 재난현장에서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활동과 화재예방활동에 관한 업무(이하 “소방업무”라 한다)를 보조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용소방대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시·읍 또는 면에 둔다.

③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필요한 경우 관할 구역을 따로 정하여 그 지역에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필요한 경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의용소방대를 화재진압 등을 전담하는 의용소방대(이하 “전담의용소방대”라 한다)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구역의 특성과 관할 면적 또는 출동거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의용소방대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제2조의2(의용소방대의 날 제정과 운영) ① 의용소방대의 숭고한 봉사와 희생정신을 알리고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매년 3월 19일을 의용소방대의 날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한다.

②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4. 20.]

제2장 의용소방대원의 임명·해임 및 조직 등

제3조(의용소방대원의 임명)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그 지역에 거주 또는 상주하는 주민 가운데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의용소방대원으로 임명한다.

1. 관할 구역 내에서 안정된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
2. 신체가 건강하고 협동정신이 강한 사람
3. 희생정신과 봉사정신이 투철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4.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에 따른 소방기술 관련 자격·학력 또는 경력이 있는 사람
5. 의사·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진 사람
6. 기타 의용소방대의 활동에 필요한 기술과 재능을 보유한 사람

제4조(의용소방대원의 해임) ①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1. 4. 20.>

1.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2. 관할 구역 외로 이주한 경우. 다만, 신속한 재난현장 도착 등 대원으로서 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1조에 따른 행위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② 그 밖에 의용소방대원의 해임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제5조(정년)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제6조(조직) ① 의용소방대에는 대장·부대장·부장·반장 또는 대원을 둔다.

- ② 대장 및 부대장은 의용소방대원 중 관할 소방서장의 추천에 따라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 ③ 그 밖에 의용소방대의 조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제7조(임무) 의용소방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의 보조
2. 구조·구급 업무의 보조
3.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및 구호업무의 보조
4. 화재예방업무의 보조
5.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8조(복장착용 등) ① 의용소방대원이 제7조에 따른 임무(제10조제2항에 따른 전담의용소방대 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복장을 착용하고 신분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 또는 의용소방대원 이었던 자가 경력증명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경력증명서를 발급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의용소방대원의 복장·신분증과 경력증명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제3장 의용소방대원의 복무와 교육훈련 등

제9조(의용소방대원의 근무 등) ① 의용소방대원은 비상근(非常勤)으로 한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용소방대원을 소집할 수 있다.

제10조(재난현장 출동 등) ① 의용소방대원은 제9조제2항에 따른 소집명령에 따라 화재, 구조·구급 등 재난현장에 출동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아 소방업무를 보조한다.

② 전담의용소방대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소집명령이 없어도 긴급하거나 통신두절 등 특별한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화재진압을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담의용소방대장은 화재진압에 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③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소방장비 등 필요한 물품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대여 또는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제11조(행위의 금지) 의용소방대원은 의용소방대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부금을 모금하는 행위
2. 영리목적으로 의용소방대의 명의를 사용하는 행위
3.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4. 소송·분쟁·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5. 그 밖에 의용소방대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제12조(복무에 대한 지도·감독)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이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복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교육 및 훈련)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 교육(임무 수행과 관련한 보건안전교육을 포함한다)·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4. 18.,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내용, 주기,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제4장 의용소방대원의 경비 및 재해보상 등

제14조(경비의 부담) ① 의용소방대의 운영과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시·도지사가 부담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소집수당 등) ① 시·도지사는 의용소방대원이 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제16조(활동비 지원)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관할 구역에서 의용소방대원이 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임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의2(성과중심의 포상 등)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별로 활동실적을 평가·관리하고, 이를 토대로 성과중심의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별 활동실적 평가·관리 방법 및 포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2. 8.]

제17조(재해보상 등) ① 시·도지사는 의용소방대원이 제7조에 따른 임무의 수행 또는 제13조에 따른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0. 12. 8.>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8.>

제5장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설립 등

제18조(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설립) ① 재난관리를 위한 자율적 봉사활동의 효율적 운영 및 상호협조 증진을 위하여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이하 “전국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전국연합회의 구성 및 조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제19조(업무) 전국연합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용소방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연구에 관한 사항

2. 대규모 재난현장의 구조·지원 활동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3. 의용소방대원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용소방대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20조(회의) ① 전국연합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1년에 한 번 개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전국연합회의 회칙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
2. 전국연합회 기능 수행을 위한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회계감사 결과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회장이 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하는 사항

③ 임시총회는 전국연합회의 회장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소집한다.

④ 그 밖에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제21조(전국연합회의 지원) 소방청장은 국민의 소방방재 봉사활동의 참여증진을 위하여 전국연합회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제22조(전국연합회의 지도 및 관리·감독) 소방청장은 전국연합회의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 및 관리·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부칙 <제18089호, 2021. 4. 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의용소방대법 시행규칙)

[시행 2021. 7. 13.] [행정안전부령 제268호, 2021. 7. 13., 타법개정]

소방청(화재대응조사과) 044-205-748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용소방대의 설치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의용소방대를 설치하는 경우 남성만으로 구성하는 의용소방대, 여성만으로 구성하는 의용소방대 또는 남성과 여성으로 구성하는 의용소방대로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지역특수성에 따라 소방업무 관련 전문기술·자격자 등으로 구성하는 전문의용소방대(이하 “전문의용소방대”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전담의용소방대(이하 “전담의용소방대”라 한다)를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용소방대의 설치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7. 8. 29.>

제3조(의용소방대의 명칭) 제2조에 따른 의용소방대의 명칭·구성 및 역할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의용소방대의 표지) ① 의용소방대에는 의용소방대 기(旗)를 두고, 의용소방대 표지 및 현판을 설치한다.

② 의용소방대 기의 도안 및 규격 등은 별표 3과 같고, 의용소방대의 표지 및 현판의 도안 및 규격 등은 별표 4와 같다.

제2장 의용소방대원의 임명 및 조직 등

제5조(임명구비서류) ① 법 제3조에 따라 의용소방대원으로 임명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의용소방대 입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 6. 9.>

1. 이력서 1부

2. 소방업무 관련 자격증 사본 1부(자격증 소지자에 한정한다)
 3. 사진(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2장
 4.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1부
- ②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3조에 따라 임명된 의용소방대원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의용소방대원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용소방대원의 임명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6조(의용소방대원의 해임사유 등) ① 법 제4조제1항제6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4. 11. 19., 2015. 6. 9., 2017. 7. 26.>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의 참석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 가. 전담의용소방대원: 다음의 모든 교육 및 훈련 참석시간
 - 1)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교육 및 훈련 연 12시간 이상
 - 2)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본교육(해당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18시간 이상
 - 나. 신규 임명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의용소방대원: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본교육 18시간 이상
 -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의용소방대원: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문교육 연 6시간 이상
 2. 법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비, 소집수당 또는 활동비 등의 집행과 관련하여 비위사실(非違事實)이 있는 경우
- ②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에게 해임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의용소방대원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만한 충분한 사유를 명확히 밝혀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사유로 의용소방대원을 해임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해임대상자는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운영위원회 개최일 전날까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5. 6. 9.>
- ④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을 해임하였을 때에는 해당 의용소방대원 및 소속 의용소방대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용소방대원의 해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7조(정년) 의용소방대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제8조(조직) ① 법 제6조에 따른 의용소방대의 조직 및 분장사무는 별표 5와 같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용소방대의 조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제9조(대장 및 부대장)** ① 관할 소방서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대장 및 부대장을 시·도지사에게 추천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② 대장은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의 명을 받아 소속 의용소방대의 업무를 총괄하고 의용소방대원을 지휘·감독한다.
- ③ 부대장은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 제10조(대장 등의 임기)** ① 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② 부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용소방대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7. 8. 29.]

- 제11조(정원 등)** ① 의용소방대에 두는 의용소방대원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8. 29.>
1. 시·도: 60명 이내
 2. 시·읍: 60명 이내
 3. 면: 50명 이내
 4.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관할 구역을 따로 정한 지역에 설치하는 의용소방대: 50명 이내
 5. 전문의용소방대: 50명 이내
- ② 의용소방대원은 관할 행정구역(동·리) 단위로 균형있게 배치되도록 임명하여야 한다.
- ③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정원의 범위 내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행정구역이 통폐합 되는 경우 행정구역 통폐합 이전 각각의 의용소방대 조직과 정원을 그대로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7. 8. 29.>

- 제12조(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① 시·도지사 및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 6. 9.>
1. 제6조제3항에 따른 의용소방대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2. 제9조제1항에 따른 대장 및 부대장의 추천에 관한 사항
 - 2의2. 법 제16조의2에 따른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별 활동실적 평가 및 포상에 관한 사항
 3. 법 제17조에 따른 재해보상금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용소방대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3조(임무) 법 제7조제5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 8. 29.>

1. 집회, 공연 등 각종 행사장의 안전을 위한 지원활동
2. 주민생활의 안전을 위한 지원활동
3. 그 밖에 화재예방 홍보 등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복장)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의용소방대원의 복장은 별표 6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복장은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구매하여 의용소방대원에게 지급한다.

③ 복장의 착용기간에 관하여는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제4조를 준용한다.

제15조(신분증명서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에게 별표 7에 따른 신분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신분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의용소방대원증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 또는 의용소방대원 이었던 자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경력증명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의용소방대원 경력(재직)증명서를 발급하고, 이를 별지 제5호서식의 의용소방대원 경력(재직)증명서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복무와 교육훈련

제16조(전담의용소방대의 운영) ① 전담의용소방대장은 법 제10조제2항 전단에 따라 자체적으로 화재진압을 수행하였을 때에는 임무 수행 후 즉시 별지 제6호서식의 전담의용소방대 활동보고서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의용소방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7조(무상대여) ①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의용소방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소방장비 등 물품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소방용 통신시설
2. 소방용 차량
3. 화재진압장비·구조구급장비 및 보호장비
4. 그 밖의 집기 및 사무용품 등

② 의용소방대원은 제1항에 따른 소방장비 등 물품을 기능 및 용도에 맞게 사용 또는 운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방장비 등의 무상대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7조의2(장비의 지급) ① 시·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용소방대원에게 진압장비 및 개인안전장비 등의 소방장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장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6. 9.]

제18조(교육 및 훈련)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 해당 호에서 정하는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기본교육을 이수한 전담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는 제2호에 따른 전문교육에 갈음하여 매월 2시간 이상 장비조작 및 화재진압 등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9., 2017. 7. 26.>

1. 신규 임명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의용소방대원: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기본교육 36시간

가. 의용소방대 제도

나. 화재 진압장비 사용방법

다. 위험물 및 전기·가스 안전관리

라. 그 밖에 의용소방대원으로서의 기본자질 함양을 위하여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제1호에 따른 기본교육을 이수한 의용소방대원: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전문교육 연 12시간

가. 수난(水難) 구조

나. 산악 구조

다. 소방자동차의 구조 및 점검

라. 그 밖에 의용소방대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의 내용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5. 6. 9., 2017. 7. 26.>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의 소방활동에 관한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별도의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5. 6. 9.>

④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소방공무원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설치된 소방학교 또는 교육훈련기관이나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원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5. 6. 9., 2017. 7. 26., 2019. 1. 3., 2020. 3. 13.>

⑤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장비 및 교재를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5. 6. 9., 2017. 7. 26.>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용소방대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5. 6. 9.>

제4장 의용소방대원의 경비 및 재해보상 등

제19조(소집수당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소방위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한다. <개정 2020. 3. 13.>

② 제1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전담의용소방대원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법 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의용소방대원에게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5. 8.>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집수당 등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20조(성과중심의 포상 등)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별로 활동실적을 평가하고 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소방본부장은 활동실적 평가 및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 6. 9.>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활동실적에 따라 운영경비를 지급하고, 포상기회를 부여하는 등 성과중심으로 포상하고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1. 6. 9.>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의 활동실적 평가, 관리 및 포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1. 6. 9.>

[제목개정 2021. 6. 9.]

제21조(재해보상) ① 법 제17조에 따른 재해보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7. 13.>

1. 요양보상
2. 장애보상
3. 장례보상
4. 유족보상

②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해보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5장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등

제22조(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의 설립) ① 의용소방대 상호간의 교류, 소방정보 교환 및 의용소방대원의 복지향상 등을 위하여 법 제18조에 따른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의 지부(支部)로서 시·도 또는 시·군·구 등에 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이하 “지역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7. 8. 29.>

② 지역연합회의 구성 및 조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23조(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이하 “전국연합회”라 한다)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각 시·도 지역연합회의 대표 2명씩으로 구성한다.

② 전국연합회에 회장 1명, 부회장 2명, 감사 2명 및 사무총장 1명을 두되(회장, 부회

장 및 사무총장은 임원으로 한다),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사무총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1. 6. 9.>

③ 전국연합회 임원 및 감사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6. 9.>

1.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2. 부회장 및 사무총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3.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시·도 지역연합회 대표의 임기가 종료되는 경우 감사의 임기도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 ④ 회장은 전국연합회를 대표하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의 의장이 되며, 전국연합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 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⑥ 감사는 업무집행 및 예산을 감사한다.
- ⑦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제24조(전국연합회의 분과위원회) ① 전국연합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분과위원회, 연구개발분과위원회, 자원봉사분과위원회를 두되,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수는 15명 이내로 한다.

② 분과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분과위원회: 전국연합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구개발분과위원회: 의용소방대 관련 연구사업 및 의용소방대의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
3. 자원봉사분과위원회: 대형재난과 관련한 시·도간 상호 지원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이 지명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시 해당 분과위원회를 소집한다.

제25조(전국연합회의 회의운영)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정기총회는 매년 1월 또는 2월에 개최한다.

②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26조 삭제 <2017. 8. 29.>

부칙 <제268호, 2021. 7. 13.>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12. 30.] [충청남도조례 제4645호, 2019. 12. 30., 일부개정]

충청남도(예방안전과), 041-635-552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해산) ① 전문의용소방대는 다음 각 호의 소방업무 관련 전문기술·자격자 등으로 구성한다.

1. 산악·수상·소방·전기·가스·기계·화학·화공·토목·건축 또는 위험물 분야 등 자격을 가진 사람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의료인 또는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진 사람
3. 1종 대형면허, 정보통신 또는 사회복지 분야 자격을 가진 사람
4. 견인차, 중장비, 덤프트럭 등 장비를 보유한 사람
5. 변호사, 법학·의학 또는 공학 분야 등 대학교 교수
6. 그 밖에 지역 특수성을 고려하여 특정 소방 활동을 위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장 의용소방대원의 임명 및 조직 등

제3조(의용소방대원의 임명) ① 의용소방대원은 희망자를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모집공고문을 소방관서 게시판, 홈페이지 등에 10일 이상 게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자가 없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소방공무원 또는 의용소방대원의 추천에 의하여 임명할 수 있다.

③ 의용소방대장(남성의용소방대장, 여성의용소방대장, 혼성의용소방대장, 전문의용소방대장, 전담의용소방대장, 지역의용소방대장을 말한다. 이하 “대장”이라 한다)이 의용소방대원의 직위를 변경할 때에는 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임명장은 승인서로 대체할 수 있다.<개정 2019. 12. 30.>

제4조(의용소방대의 고문)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의 운영에 관한 자문 역할을 위해 대장으로 퇴임한 자 또는 지역주민 중 명망 높은 자를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고문은 의용소방대 정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 12. 30.>

제5조(의용소방대원의 해임 등) ①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용소방대원을 해임하는 경우에는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해임 조치하여야 한다.

② 의용소방대원이 본인의 원에 따라 사직할 때에는 소방서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며, 소방서장이 사직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직한 것으로 본다.

제6조(조직)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각 의용소방대 하부 조직을 별표와 같이 정할 수 있다.

② 규칙 제2조제1항의 남성과 여성으로 구성하는 의용소방대(이하“혼성대”라 한다)의 부대장은 2명으로 할 수 있다.

제7조(대장 등의 임기) ① 대장·부대장의 임기는 1월 1일 또는 7월 1일에 시작한다.

② 대장 등이 원에 의한 사직, 법령 개정 등으로 임기 중 퇴임하여 궐위 발생 시 제2항에 의한 임기 시작까지 직제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의2(대장 등의 임무) ① 대장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속 의용소방대를 대표하며 제반업무를 총괄 운영
2.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의 명을 받아 소속 의용소방대 업무를 지휘·감독
3. 소속 의용소방대 관련 민원·분쟁 발생 방지 및 조정
4. 소속 의용소방대의 화합과 조직 발전 도모
5. 그 밖에 소속 의용소방대원의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

② 부대장은 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의3(대장 등의 해임 등) ①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제7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장 및 부대장에 대하여 면직, 해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7조의 2에 따른 임무를 태만히 하는 경우
3. 그 밖에 소방기관 및 의용소방대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대장 또는 부대장으로서 그 직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대장 또는 부대장을 해임하는 경우에는 제5조, 규칙 제6조 등 의용소방대원의 해임 절차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정원) ① 의용소방대별 정원은 다음과 같다.

1. 시·읍지역 : 남성대 50명, 여성대 40명
2. 면지역 : 남성대 30명, 여성대 20명
3. 지역대, 전문의소대 : 20명

4. 혼성대 : 면지역 40명, 지역대 30명, 전문의소대 20명
 ② 소방서장은 내부분쟁 발생이나 지휘·감독에 불응한 경우 제1항에서 정한 의용소방대별 정원의 3분의 1 범위에서 대원의 수를 줄일 수 있다.

제3장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제9조(구성) ①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위원은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관련 경력자 또는 외부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개정 2019. 12. 30.>

③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여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회의를 소집하며 표결권을 가진다.

제10조(운영위원회 심의) ① 규칙 제12조제2항제4호의 “그 밖에 의용소방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용소방대 신규설치 심의
2. 의용소방대 해산 등 심의
3. 전담의용소방대 지정 및 해지 심의
4. 의용소방대 감원 심의
5. 대장 및 부대장의 해임 등 심의
6. 그 밖에 의용소방대 또는 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심의

② 운영위원회는 제1항제2호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심의한다.

1.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의 개편이나 인구의 감소로 의용소방대의 유지가 곤란할 경우
2. 의용소방대의 화합을 저해하는 심한 분쟁이 있거나 그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지 못한 경우
3. 소방서장의 지휘와 감독에 불응하거나 소방업무 보조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경우

③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절차) ①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30.>

② 운영위원회는 심의요구서를 접수한 경우 30일 이내에 심의를 마쳐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는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으로부터 대장 및 부대장 또는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해임 및 해산 처분의 심의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출석 요구서를 해임대상자 또는 해산 대상 의용소방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30.>

④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개최 일시·장소·방법 등을 결정하고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과반수가 3명 미만인 경우에는 3명이상으로 한다)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운영위원회는 의결을 한 때에는 의결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심의를 요구한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심의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30.>
- ⑦ 운영위원회는 대장, 부대장 후보자에게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후보자는 그 요구에 응해야 한다.

제4장 복무와 교육훈련

- 제12조(전담의용소방대 운영 등)** ① 소방서장은 전담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소방관련 경력자 등을 운영지도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 ② 운영지도관은 비상근으로 한다.
 - ③ 소방서장은 필요할 경우 전담의용소방대에게 화재 진압 등 소방 활동을 위하여 출동 대기 근무를 명할 수 있다.

- 제13조(소방장비 관리)** ① 의용소방대에서는 소방장비 등을 「소방장비 관리규칙」을 준용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② 소방서장은 원활한 소집명령을 위하여 비상연락망을 확보하고 유·무선방송통신, 정보통신기기 등을 이용하여 소집명령을 전달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 제14조(지도 감독)**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본부장은 의용소방대 복무에 대하여 연간 1회 이상 지도 감독을 할 수 있으며, 소방서장은 반기 1회 이상 지도 감독 하여야 한다.

- 제15조(교육 및 훈련)** ① 대장이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 결과를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신규 의용소방대원은 임용일부터 3개월 이내에 소방서장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 ③ 소방서장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을 이용하여 의용소방대원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④ 의용소방대원이 소방본부, 소방학교, 한국소방안전원 등에서 집합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월중 교육·훈련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9. 12. 30.>

제5장 의용소방대원의 경비 및 재해보상 등

- 제16조(소집수당 등)** ① 소집수당 지급신청은 대장이 소방활동기록부를 첨부하여 소방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소집수당 지급을 위한 시간계산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등이 소집하여 임무를

수행한 시간을 월단위로 합산한 후 지급한다.

③ 운영지도관에게 지급하는 소집수당은 1일 6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개정 2019. 12. 30.>

④ 규칙 제19조제2항 단서의 전담의용소방대원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법 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의용소방대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9. 12. 30.>

제17조(성과중심의 보상) ①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의 활동실적을 반영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과중심의 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퇴임대원에 대하여 공로패를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9. 12. 30.>

1. 대장, 부대장, 지역연합회 회장·여성회장 직을 수행하다 퇴임하는 자<개정 2019. 12. 30.>

2. 총 재임기간이 20년 이상인 부장 이하 대원

③ 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공적이 있는 의용소방대 또는 의용소방대원에게 포상을 할 수 있다.

④ 의용소방대원의 성과보상 및 사기진작 등을 위하여 국내·외 견학을 실시할 수 있다.

⑤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17조에 해당하지 않는 의용소방대 활동 등으로 인한 보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9. 12. 30.>

제18조(경비부담 등) ①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의용소방대 운영 또는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원의 임무수행을 위한 소집수당

2. 의용소방대원 재해보상을 위한 재해보상금 또는 단체보험

3.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4. 의용소방대의 소방 활동 지원을 위한 청사, 안전장구, 차량, 피복, 집기 등 구입비 및 유지·관리비

5. 전국 또는 지역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참가에 따른 소요경비

6. 의용소방대 봉사활동, 캠페인 등을 위한 소요경비

7. 재난현장활동의 전문화를 위한 교육·훈련비

8. 교육·훈련 및 회의 참석을 위한 여비

9. 의용소방대 소집을 위한 방송통신시설 설치 비용

10. 화재예방 및 진화 설비 설치·관리비. 다만, 소방관서로부터 5킬로미터 이상 원거리 지역 또는 도서지역 등 소방차량의 진입이 곤란한 지역에 한함.

11. 그 밖에 의용소방대 운영경비 및 기타 활동지원을 위한 필요경비

② 대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경비를 관련규정 및 지침에 따라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

제19조(재해보상) ① 의용소방대원의 재해보상금은 재해를 당한 날 또는 장애가 확정된

- 날로부터 1년 이내 본인 또는 유족이 대장을 경유하여 소방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 ② 소방서장은 재해보상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는 등 환수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거쳐 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③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상 상속의 순위에 따라 지급하되 유족 중 동순위자(同順位者)가 2명 이상 있을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로서 그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모든 사람의 재해보상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는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해당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2. 제1호에 따른 재해보상금의 수령을 위임하려면 대표자선정서에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제6장 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

- 제20조(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의 설립)** ① 의용소방대 상호간의 소방업무 정보교환, 의용소방대원의 복지향상 도모 등 지역의용소방대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도 및 시·군 행정구역 단위로 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이하 “지역연합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 ② 지역연합회의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는 “충청남도 의용소방대연합회(이하“도 연합회”라 한다)”라 한다.
 2. 시·군은 “○○소방서 의용소방대연합회(이하 “소방서 연합회”라 한다)”라 한다. 다만 소방서가 설치되지 않은 시·군은 “○○시·군 의용소방대연합회”라 한다.

- 제21조(구성 등)** ① 도 연합회의 회원은 소방서 연합회장과 여성회장으로 구성하며, 소방서 연합회의 회원은 관할구역 내의 시, 읍·면 대장, 전문의용소방대장, 전담의용소방대장으로 구성한다.
- ② 도 연합회는 연합회장, 여성회장, 부회장, 감사 등 9명 이내에서, 소방서 연합회는 연합회장, 여성회장, 부회장 등 5명 이내에서 임원을 둘 수 있고, 조직 및 임원 구성에 관한 세부사항은 연합회칙으로 정한다.
- ③ 지역 연합회장과 여성회장은 재적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추천하되,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다 득표자와 차순위 득표자에 대한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를 추천한다.

- 제22조(회장 등의 임기)** ① 지역 연합회장 및 여성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7. 6. 30., 2019. 12. 30.>
- ② 소방서 회장은 대장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직무수행을 위하여 대장을 그만두더라도 회장의 남은 임기를 보장한다.<신설 2019. 12. 30.>
- ③ 도 회장은 대장 또는 소방서 회장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직무수행을 위하여 대장 또는 소방서 회장을 그만두더라도 회장의 남은 임기를 보장한다.<신설 2019. 12. 30.>

제23조(운영 등) ① 지역연합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지역연합회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요구에 따라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이 있는 경우
 2. 삭제 <2017. 6. 30.>
 3. 삭제 <2017. 6. 30.>
 4. 원에 의하여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의용소방대원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신설 2017. 6. 30.>
 - 가. 법 제4조에 따라 해임된 경우
 - 나. 법 제5조에 따른 정년에 도달한 경우
 - 다. 원에 의하여 사직한 경우
 6. 대장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다만, 회장의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기가 만료 될 때까지 회원의 자격이 상실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6. 30., 개정 2019. 12. 30.>
- ② 기타 지역연합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연합회칙으로 정한다.

제25조(지역연합회의 지도 및 관리·감독) 소방본부장은 도 연합회의, 소방서장은 소방서연합회의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 및 관리감독을 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26조(권한위임) 도지사는 의용소방대의 운영상 필요한 권한의 일부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334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1항, 제7조 제1항, 제2항, 제10조 제1항, 제2항, 제12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1항 내지 제4항, 제23조 제2항, 제3항, 제24조, 제30조 제1항, 제2항, 제30조의3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 규정은 2009. 1. 1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중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3조의 “소방서·군 관할구역의 의용소방대별로 선정하여 소방서장 또는 군수에게 추천한다.”를 “소방서 관할구역의 의용소방대별로 선정하여 소방서장에게 추천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3항, 제8조제2항, 제9조의 “소방서장 또는 군수”를 “소방서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의 “소방서와 군”을 “소방서”로 한다.

제3조(대원의 임용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해 임용된 대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4조(대장의 임기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임용된 대장의 임기는 계속되며 이 조례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5조(대원의 신분증명서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발급된 대원의 신분증명서는 이 조례에 따라 새로이 발급할 때까지 유효하다.

제6조(대원의 복제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지급받은 복제는 새로운 복제를 지급받을 때까지 착용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34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4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555호 2010.12.30> (충청남도 도세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생략)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⑥ (생략)

⑦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⑧-⑩ (생략)

부칙 <조례 제3565호 2010.12.30.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원의 임명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해 임명된 대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3조(대장의 임기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임명된 대장의 임기는 계속되며 이 조례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4조(대원의 신분증명서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발급된 대원의 신분증명서는 이 조례에 따라 새로이 발급할 때 까지 유효하다.

제5조(대원의 복제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지급받은 복제는 새로운 복제를 지급받을 때까지 착용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3617호 2011.06.10.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6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새로 임명되는 대장과 지역대장에게 적용하고,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재직 중인 대장 및 지역대장의 경우는 시행일 이후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37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95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용소방대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의용소방대 중 제8조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제8조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해당 의용소방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지역연합회원 구성에 관한 특례) 제21조, 제22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전에 임명된 도 연합회 연합회장과 여성회장의 임기 및 임원의 직위는 유지되며, 조례 개정 이후 신규 임명된 임원부터 제21조 및 제22조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40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267호, 2017. 6.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회원 자격에 관한 적용)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하는 지역 연합회장과 여성회장에도 적용 한다.

부칙 <조례 제4645호, 2019.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1. 12. 30.] [충청남도규칙 제3474호, 2021. 12. 30., 일부개정]

충청남도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2.30.>

제2조(지역대 설치) <삭 제>

제3조(명칭 및 관할구역) 소방서별 의용소방대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4조(대장 등 임용 구비서류) ① 대원 중에서 의용소방대장·전담의용소방대장·전문의용소방대장·혼성의용소방대장·지역의용소방대장·부대장으로 임용할 경우에는 소방서별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방서장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의용소방대장 임명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30.>

② 소속 의용소방대원이 아닌 사람을 의용소방대장·전담의용소방대장·전문의용소방대장·혼성의용소방대장·지역의용소방대장·부대장으로 임용할 경우에는 소속 대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으로 하되 제1항의 소방서장 추천서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 임명구비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개정 2021. 12. 30.>

제5조 삭제 <2015.9.10.>

제6조(의용소방대 연합회 사무실) 삭제<2012.6.20.>

의용소방대 연합회 사무실은 충청남도내 시군에 둘 수 있다.<개정 2021. 12. 30.>

제7조(의용소방대원의 임명절차) ①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의용소방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을 신규 임명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임명장을 수여한다.

②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대원을 추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의용소방대원 추천서를 작성하여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천을 받은 사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대원의 직위를 변경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의용소방대원 직위변경 추천서를 작성하여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1. 12. 30.]

제8조(의용소방대의 고문 위촉) 조례 제4조에 따라 의용소방대의 고문을 신규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본조 신설 2021. 12. 30.]

제9조(의용소방대원의 해임 등) ① 대원을 해임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의용소방대원 해임통지서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대원이 사직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의용소방대원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1. 12. 30.]

제10조(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심의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심의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심의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대원은 회의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별지 제10호서식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조례 제11조제6항에 따라 의결을 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1. 12. 30.]

제11조(교육 및 훈련) 조례 제15조에 따른 교육·훈련 기록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의용소방대 교육·훈련 기록부에 따른다.

[본조 신설 2021. 12. 30.]

제12조(소집수당의 청구)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집수당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소집수당 신청서와 별지 제14호서식의 소방활동 기록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2. 30.]

제13조(재해보상청구) 조례 제19조에 따라 재해보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5호서식의 보상청구서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2. 30.]

제14조(신분증명서 발급 등) ① 대원이 신분증을 분실하거나 파손 또는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6호서식의 의용소방대원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에 따라 발급권자에게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대원이 퇴직하거나 면직 또는 해임된 때에는 신분증을 발급권자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2. 30.]

충청남도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소관부서 :소방본부 화재대책과

(일부개정) 2005-04-11 조례 제 03134호

(일부개정) 2008-09-22 조례 제 3348호

(일부개정) 2009-02-17 조례 제 3387호

(일부개정) 2012-02-20 조례 제 3663호

(일부개정) 2013-05-10 조례 제 3756호

(일부개정) 2019-10-30 조례 제 4616호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용소방대원의 자녀 또는 유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2.20.>

제2조 (장학생의 자격)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의용소방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자녀장학금 지급대상자는 해당연도 1월 1일 기준 2년 이상 근속(도의 지역 경력을 포함한다)한 대원의 자녀 또는 유자녀(이하"자녀"이라 한다)로서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개정 2012.2.20., 2019. 10. 30.>

1. 삭제<2019. 10. 30.>
2. 삭제<2019. 10. 30.>
3. 삭제 <2012.2.20.>

제3조 (장학생 추천) 남성의용소방대장, 여성의용소방대장, 혼성의용소방대장, 지역의용소방대장, 전문의용소방대장, 전담의용소방대장(이하 "대장"이라 한다)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소속 대원의 자녀를 소방서장에게 추천한다. <개정 2012.2.20., 2019. 10. 30.>

제4조 (장학생 선발) ① 소방서장은 제3조에 따라 추천된 대원의 자녀를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자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매학기 개시 후 2월 이내에 심사·선발한다. <개정 2012.2.20,2013.5.10,2019.10.30.>

1. 순직대원의 자녀
2. 공상대원의 자녀
3. 상훈법에 의한 상순위 서훈을 받은 대원의 자녀
4. 소방서장 이상 상순위 표창을 받은 대원의 자녀<개정 2012.2.20>
5. 장기근속대원의 자녀
6. 학생의 학업성적 또는 특기의 정도<개정 2012.2.20>
7. 그 밖에 추천 당시 결정한 순위 <2012.2.20>
8. 삭제<2012.2.20>

②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생 선발결정 결과를 도지사에게 30일 이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0>

③ 삭제 <개정 2012.2.20>

제4조의1(선발의 특례) 삭제<2012.2.20.>

제5조 (장학생의 선발인원) <조 제목 개정 2013.5.10.>장학생의 선발인원은 각 소방서 의용소방대 정원(각 소방서의 시·읍·면별 의용소방대 정원의 합계를 말한다)의 100분의 5(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한다)로 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선발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2.2.20, 2013.5.10.>

② 삭제<2012.2.20>

③ 삭제<2012.2.20.>

제6조 (장학금액) 학생에게 지급하는 연간 장학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산 사정에 따라 장학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 10. 30.>

1. 고등학생 : 50만원
2. 대학생 : 100만원

제7조(장학금의 집행 및 지급) <개정 2019. 10. 30.>①임명권자는 장학금을 소속기관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개정 2019. 10. 30.>

② 장학금은 학기별로 나누어 지급하고 매학기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장학증서와 함께 장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직접 지급한다.<개정 2012.2.20,2019.10.30.>

③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에 따른 지급 정지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개정 2009.2.17.>

제7조의2 삭제<2019.10.30.>

제8조 (지급의 정지)① 장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시켜야 한다.<개정 2009.2.17,2019.10.30.>

1. 대원이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제15조에 해당되어 해임되었을 때 <개정 2012.2.20>
2. 장학생이 퇴학 또는 정학처분을 받았거나 휴학을 하였을 때
3. 제2조에 따른 장학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때 <개정 2012.2.20>
4. 삭제<2009.2.17>

② 소방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라 장학금 지급을 정지한 때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2.20.>

제9조(장학금 회수)<개정 2019. 10. 30.> 소방서장은 제8조에 따른 지급의 정지 사유가 있는 사람에게 장학금이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그 장학금의 전액을 지체 없이 되돌려 받아야 한다.

제10조 (장학기금특별회계 설치)①임명권자는 소속기관에 장학금의 지급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기금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9. 10. 30.>

②장학기금특별회계의 세입금은 일반 회계전출금·보조금으로 할 수 있다. <개정 1999.9.20,2019.10.30.>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222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장학생에관한경과조치) 시·군 조례에 의하여 선발된 장학생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선발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조례 제23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443호)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588호)

이 조례는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8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9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313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5. 7.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선발된 장학생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선발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3348호)

이 조례는 2009. 1. 1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33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 36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선발된 장학생은 이 조례에 따른 장학생으로 본다.

부칙(조례 제37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4616호, 2019. 10.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0. 3. 10.] [충청남도규칙 제3408호, 2020. 3. 10., 일부개정]

충청남도(예방안전과), 041-635-552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3.10.>

제2조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장학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 의용소방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3.10>

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 기관장 발행) 1통
3. 재학증명서 1부.<신설 2020.3.10>
5.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제3조 (추천) 장학금신청서를 접수한 의용소방대장은 조례 제2조의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5호 서식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소방서장에게 추천한다. <개정 2008.12.24.,2020.3.10.>

제4조 (선발) 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서장은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4.,2020.3.10.>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의 지급신청서를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12.24>

④ 조례 제4조에 따른 자체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소방공무원 또는 외부전문가 중에서 소방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신설 2020.3.10.>

제5조 (장학금의 지급)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의 지급은 소방서장이 장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지급하고 장학생에게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장학 증서를 수여하여야 하며,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현황을 별지 제8호 서식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0>

③ 3차회의 개요 및 회의자료

1 개요

- 일 시 : 2022. 11. 25(금). 10:00 ~ 11:40(100분)
- 장 소 : 충청남도천안동남소방서 대회의실(4층)
- 대 상 : 연구모임 회원 및 관계자 20명
- 내 용 : 3차 회의(최종회) 토의
- “의용소방대 활성화를 위한 연구”

2 세부 추진계획

① 3차 회의(안)

시 간	내 용	비 고
10:00 ~ 10:05	05' · 개회, 연구모임 설명	전문위원
10:05 ~ 10:10	05' · 대표의원 인사말	대표의원
10:10 ~ 10:20	10' · 회원 소개 및 인사	"
10:20 ~ 11:40	80' · 모임 관련 토의	활성화 방안 토의 (관련 조례 일부개정 등)
11:40	· 폐회	대표의원

※ 발제 : “의용소방대 활성화 방안” 신한철 의원

※ 회의는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 될 수 있음

나. 회의자료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한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 호
----------	-----

- 발의연월일 : 2023. 2. .
- 발 의 자 : ○○○, ○○○, ○○○,
○○○, ○○○, ○○○,
○○○ 의원 등 7인
- 찬 성 자 : ○○○ 의원 외 8인

1. 개정 이유

- 의용소방대의 숭고한 봉사과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한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 의용소방대의 조직에 관하여 상위법령과 다르게 하부조직을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며,
- 숙련된 의용소방대원의 직책 임명을 통한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정성·합리성 있는 인사를 통해 조직 단결력 및 결속력을 강화하고자 의용소방대원 직책 임명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에 관한 사항 근거 규정 신설. (안 제2조의 2)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용소방대의 조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에 의용소방대의 조직 및 분장사무를 별표 5에 규정하고 있음에도, 조례 제6조제1항 별표의 각 의용소방대 하부조직을 상위법령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고 상위법과 중복되어 조례로 규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를 삭제.

- 의용소방대 대원 중에서 부장, 반장을 임명할 경우에 그 자격과 고려 사항을 명확히 하고, 임명기준에 적임자가 없거나 신규로 의용소방대를 설치하는 경우는 예외로 규정함. (안 제7조의2 신설)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관련법규 발췌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의2)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조)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제1항)
-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

라. 비용추계서 : 따로 붙임(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의용소방대의 날 운영) ① 도지사는 법 제2조의2제2항에 따라 의용소방대의 숭고한 봉사와 희생정신을 알리고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매년 3월 19일에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를 한다. ② 도지사는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부장·반장의 임명 기준) 대원에서 반장, 반장에서 부장으로 직위를 임명할 때에는 각각 3년 이상 근무한 대원을 최우선 임명하되, 법 제7조 및 제13조의 활동 사항을 고려하여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임명 기준에 적합한 대원이 없거나 신규로 의용소방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제1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u>제2조의2(의용소방대의 날 운영) ①</u> <u>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u> <u>대의 숭고한 봉사와 희생정신을 알</u> <u>리고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매</u> <u>년 3월 19일에 의용소방대의 날 기</u> <u>념행사를 한다.</u></p> <p><u>② 도지사는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u> <u>행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u> <u>수 있다.</u></p>
<p><u><신 설></u></p>	<p><u>제3조의2(반장·부장의 임명 기준) 대</u> <u>원에서 반장, 반장에서 부장으로 직</u> <u>위를 임명할 때에는 각각 3년 이상</u> <u>근무한 대원을 최우선 임명하되, 법</u> <u>제7조 및 제13조의 활동 사항을 고</u> <u>려하여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임</u> <u>명 기준에 적합한 대원이 없거나</u> <u>신규로 의용소방대를 설치하는 경</u> <u>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u></p>
<p>제6조(조직)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 서장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각 의용소방대 하부조직을 별표와 같이 정할 수 있다.</p> <p>② 규칙 제2조제1항의 남성과 여성으 로 구성하는 의용소방대(이하“혼성 대”라 한다)의 부대장은 2명으로 할 수 있다.</p>	<p>제6조(조직) ① <u><삭제></u></p> <p>② (현행과 같음)</p>

<붙임>

관련법규 발취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 17576호, 2020.12.8.)

제2조의2(의용소방대의 날 제정과 운영) ① 의용소방대의 숭고한 봉사와 희생정신을 알리고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매년 3월 19일을 의용소방대의 날로 정하여 기념 행사를 한다.

②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조(의용소방대원의 임명)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그 지역에 거주 또는 상주하는 주민 가운데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의용소방대원으로 임명한다.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부령 제 268호, 2021.7.13.)

제8조(조직) ① 법 제6조에 따른 의용소방대의 조직 및 분장사무는 별표 5와 같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용소방대의 조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붙임>

[별지 제2호 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 운영

2. 미첨부 근거 규정

-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2항 제1호

제12조(비용추계 대상) ① 도지사 또는 도의회의 의원과 위원회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자치법규 입법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자치법규 입법안에 붙여야 한다.<개정 2021. 7. 2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비대상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21. 7. 20.>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자치법규 입법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개정 2021. 7. 20.>
 3. 상위법령 개정 또는 기관·조직 변경에 따른 자치법규 개정인 경우<신설 2021. 7. 20.>
 4.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단순한 자구 수정인 경우<신설 2021. 7. 20.>
 5. 그 밖에 자치법규의 제·개정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신설 2021. 7. 20.>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조례안이 수정되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에서 수정한 자치법규 입법안과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자치법규 입법안에 관하여는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신설 2021. 7. 20.>

3. 미첨부 사유

- 금번 조례안 개정으로 추가적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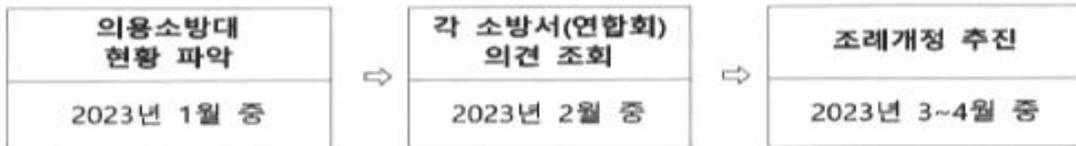
작성자	<예시 1> 충청남도의회 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 <예시 2> 충청남도 ○○○실(국) ○○○○과장 ○○○ 충청남도의회 의원 ○○○
연락처	(041) 000 -0000

□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3조 *별표 개정

* 「소방서별 의용소방대의 명칭 및 관할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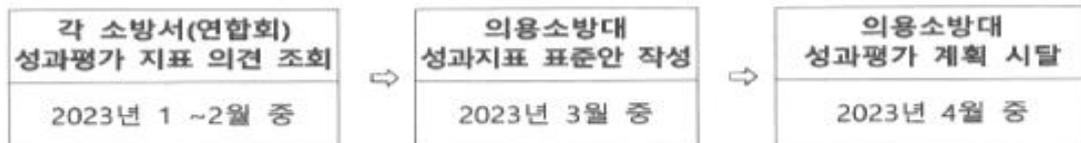
- ◆ 개정 이유: 농촌지역 고령화 및 인구 감소 등으로 의용소방대원 충원이 어려운 의용소방대의 혼성의용소방대로 전환이 필요함

◆ 추진 계획



□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성과평가 기준 정립」

- ◆ 관련근거: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성과중심의 보상)
- ◆ 현 상 황: 본부 및 각 소방서(연합회)별 성과평가 지표가 상이함
- ◆ 개 선 안: 본부 및 소방서(연합회)별 성과평가 지표 통일 추진
- ◆ 추진 계획



※ 평가지표에 의용소방대 관련 자격증(심폐소생술 강사 등) 취득자 가점 부여 명시화

< 2022년도 연구모임 결과 >

구 분	때 · 곳	주요 내용	비고
제1차 연구모임	2022. 7. 28.(목) 천안동남소방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원 상호간 연구모임 목적 및 방향 공유 • 의용소방대 활성화 방안 사례 발표 및 토론 	
제2차 연구모임	2022. 10. 7.(금) 천안서북소방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회의 내용 법률검토 및 개선방안 토론 (의용소방대 소집수당 외 4건) 	
제3차 연구모임	2022. 11. 25.(금) 천안동남소방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용소방대 설치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 추진 •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성과평가 기준 정립 	

⑤ 토론현황 및 관련사진

가. 토론현황

○ 발족식(1차 회의)

소속/성명	발제 및 발언내용	비고
연구모임대표/신한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원소개 및 인사 ○ 간사선정 : 나기영(천안동남소방서 의용소방대원) ○ 모임 운영방향 토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모임 일정 : 코로나19 감안 추후 공지 - 현장방문, 토론회 : 추후 별도 선정 	
충남도의원/신한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 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 제: 의용소방대 업무현황 및 활성화 방안 - 내 용: 의용소방대 관련 법규 및 조례 소개 ○ 자발적 소방보조 역할의 봉사단체로서 처우개선 필요 	
도의원/홍성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와 시군구가 적극적으로 의용소방대 활동을 위해서 정책예산을 편성 운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만큼 도의원들이 세세하게 관련 법규를 살펴서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도의원/김도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용소방대원들이 각종 출동과 교육훈련으로 지급되는 수당 및 자녀장학금제도 등 현실적 여건에 부합되는지 검토 	

소속/성명	발제 및 발언내용	비고
연합회장/류석만	○ 의용소방대원 입대 및 해임등 관련 법규 개정이 필요, 고령 화사회 진입관련 연령제한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의용소방대 명예를 실추하는 일부대원의 해임제도 개선	
여성회장/박효숙	○ 의용소방대운영을 위한 수당 및 운영비 책정이 부족함 ○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서 적극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함	
동남연합회장/이권재	○ 지역특성을 감안한 출동, 진압장비 배치, 피복개선 필요함 ○ 협소하고 낡은 소방청사 증 신축이 시급한 실정 ○ 동남구 신부동 주변 119안전센터 신설로 사각지대 해소	
서북연합회장/이완희	○ 천안동남, 서북 의용소방대원 사기진작과 교류활성화 대책 필요 및 상호 우호적 발전방향 지향	

○ 2차 회의

소속/성명	발제 및 발언내용	비고
예방과장/김상식	○ 1차 회의 내용 검토 향후 개선방향 설명 ① 의용소방대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및 장학금제도가 현실과 부합되는지 여부 설명→ 충남이 전국최상위 지급 ② 사회적 고령화 추세에 있어 의용소방대원의 나이제한 검토 및 해임규정 개선안→소방청 의견수렴 중 ③ 의용소방대원 운영비 책정 예산편성 개선안→개선노력 ④ 출동진압장비 및 지급 피복개선, 천안시 동남구 119안전 센터 신설안→개선노력	
대표의원/신한철	○ 의용소방대의 조직문화 개선을 위하여 다각도로 발전적 토의 필요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등 해임사유 대원에 대한 각 지역별 의용소방연합회의에서 해임건에 대한 심의 필요함 향후 관련 규정 개선에 노력하겠음	
연합회장/류석만	○ 의용소방대 본대, 전담대, 지역대장들의 계급구조에 대한 불만이 있는 만큼, 도 소방본부차원에서 기준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아울러 시군별 의용소방연합회에서 대원 자녀의 장학금 지급에대한 형평성 차원에서 합리적 결정이 필요함	

○ 3차 회의

소속/성명	발제 및 발언내용	비고
소방본부 예방과장 / 김상식	○ 의용소방대 관련 조례안 개정 추진 사항 ①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 신설 ② 의용소방대 법률상 통일된 조직정비 ③ 의용소방대원의 직책임명 기준 마련 ④ 농촌지역 고령화 및 인구감소로 인한 혼성의용소방대 조례입법 추진	
대표의원 / 신한철	○ 2023년 의용소방대 성과급 기본계획 성과지표 통일 ○ 2023년 의용소방대 설치운영관련 조례개정 추진	
도의원 / 홍성현	○ 2023년 소방공무원복지향상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연구활동 지원 및 의용소방대원이 조직발전 저해 등 해임사유 강화 필요	
도의원 / 김도훈	○ 의용소방대원의 복지향상 및 봉사활동에 사명감 가지고 봉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음	
연합회장 / 류석만	○ 시군별 의용소방대 기동차량 도색 통일화 예산 마련 주문 ○ 의용소방대원 선진지 견학 선진국 위주의 비교행정으로 도입가능한 지역으로 선정이 바람직	

나. 관련사진

○ 1차회의, 발족식(2022. 7. 28. 10:30~)



○ 2차회의(2022. 10. 7. 10:00~)



○ 3차 회의(2022. 11. 25. 10:00~)



⑥ 언론보도

충남신문

(2022.7.28.)정덕진기자

충남도의회, '의용소방대 활성화 방안 연구모임 발족

1차회의 개최.....28일 천안동남소방서 대회의실



충남도의회는 28일 천안동남소방서 대회의실에서, '의용소방대 활성화 방안 연구모임(대표 신한철 도의원/국민의힘, 천안2 이후 연구모임) 발족식과 함께 제1차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연구모임은 각종 재난재해에 대응하는 의용소방대의 역할 분석을 통해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더 안전한 지역사회 민간자율 봉사단체로서 위상 제고를 위해 출범했다.

이날 회의는 충남도의회 홍성현 부의장을 비롯하여, 신한철 모임 대표의원, 김도훈 의원, 박정수 의원, 강성기 천안시의원, 각 지역 의용소방대장 및 관계자 등 20여 명이 함께 했다.

진행은 개회 및 연구모임 설명, 대표의원 인사, 회원 소개 및 인사, 모임 관련 토의, 폐회 순으로 진행 되었다.



이날 회의는 의용소방대 관련 법규를 분석하고 지역별 입대자원 불균형 문제 해소 및 정예대원을 양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으고, 향후 현장 방문을 통해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도출하기로 했다.

신한철 대표의원은 “다양한 연구활동을 통해 의용소방대원에게 확고한 역할 정립과 재난현장 대응능력의 중요성을 인식시켜야 한다” 며 “도내 민간자율봉사단체와 비교분석을 통해 발전방향을 찾는 데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고 밝혔다.



홍성현 부의장은 “의용소방대의 운영을 위한 실질적 예산정책반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특히 출동장비의 보강, 청사 개선 등을 위해 판례, 조례 등을 검토하여 개선” 할 계획을 밝혔다.

류석만 충남의용소방대 연합회장은 “의용소방대 발전을 위해 대원의 임용, 해임 등 인사제도 관련 법령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즉, “정년나이를 현시대에 맞게 보완하고, 퇴임한 대장들과 일반인들로 구성된 ‘소방안전운영위원회’ 또한 활성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이권재 동남의용소방대장은 화재 출동 등,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출동장비 보강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예를 들어 산악구조 활동시 활동성이 편한 스판 재질의 의복 등을 건의했다.

박효숙 충남의용소방대연합 여성회장은 “활동 등으로 지급 받는 비용이 모임의 회비로 전부 나가거나, 출동 등이 없어 수입이 없어도 회비는 내야 하는 부담 때문에 이탈하는 대원이 늘고 있다” 며 “이 또한 보완이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장비, 차량, 피복 등의 개선 및 보완 의견들이 뒤따랐다.

충남도의회, '의용소방대 활성화 위해 첫발'



충남도의회 의용소방대 활성화 연구모임

‘충남도의회 의용소방대 활성화 연구모임’ (대표 신한철 의원)은 지난 28일 천안동남소방서 대회의실에서 발족식을 열고 의용소방대 업무현황과 문제점을 공유했다.

연구모임은 이날 의용소방대 관련 법규를 분석하고, 지역별 입대 자원 불균형 해소 및 정예대원을 양성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향후 현장방문을 통해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키로 했다.

신한철 의원(천안2·국민의힘)은 “다양한 연구활동을 통해 의용소방대원에게 확고한 역할을 정립시키고, 재난현장 대응 능력의 중요성을 인식시켜야 한다”며 “도내 민간 봉사단체와 비교·분석을 통해 발전 방향을 찾는 데도 힘을 쏟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성현 의원은 “의용소방대 운영을 위한 실질적 예산 정책 반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출동 장비의 보강, 청사 개선 등을 위해 관련 조례 등을 검토해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류석만 충남의용소방대 연합회장은 “의용소방대 발전을 위해 대원의 임용과 해임 등 신분제도 관련 법령도 면밀히 살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권재 동남의용소방대 연합회장은 “화재 출동 등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출동 장비 보강이 이뤄져야 하고, 우선적으로 동남소방서의 비좁은 청사 개선 또한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 충청뉴스(<http://www.ccnnews.co.kr>)



충남도의회 '의용소방대 역할 분석을 통한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모임'은 지난 7일 천안서북소방서 대회의실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의용소방대원 활동 사항에 관한 법규, 조례 등을 검토 논의했다.

충남도의회가 의용소방대원의 다양한 대민 봉사활동과 대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섰다.

도 의회 '의용소방대 역할 분석을 통한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모임'은 지난 7일 천안서북소방서 대회의실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의용소방대원 활동 사항에 관한 법규, 조례 등을 검토 논의했다.

특히 이번 모임에서는 의용소방대원의 ▲ 자녀장학금 제도 ▲소 집수당 ▲피복 개선 등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지적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모임을 통해 더 좋은 방안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신한철 의원은 “앞으로 사회변화 추세에 맞춰 다양한 전담의용소방대를 추진해 가기로 한 만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더욱 리더십을 발휘해 주길 부탁드립니다”며 “의회에서는 관련 규정을 함께 개선해 나가는 한편 예산안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충남일보(<http://www.chungnamilbo.co.kr>)



충남도의회가 의용소방대원의 다양한 대민 봉사활동과 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에 앞장섰다.

도의회 '의용소방대 역할분석을 통한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모임(대표 신한철)'은 7일 천안서북소방서 대회의실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의용소방대원 활동 사항에 관한 법규, 조례 등을 검토 논의했다.

특히 이번 모임에서는 의용소방대원의 △자녀장학금제도 △소집수당 △피복개선 등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지적됐다.

이에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모임을 통해 더 좋은 방안을 찾아가기로 다짐했다.

신한철 의원은 "앞으로 사회변화 추세에 맞춰 다양한 전담의용소방대 추진해 가기로 한 만큼 조직문화개선을 위해 더욱 리더십을 발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며 "회의에서는 관련 규정을 함께 개선해 나가는 한편 예산안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내포=박보성기자

출처 : 충청일보(<https://www.ccdailynews.com>)



연구모임 대표 신한철 의원...소방대원의 봉사활동과 사기 진작 위한 제도방안 논의

충남도의회(의장 조길연)가 의용소방대원의 다양한 대민 봉사활동과 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앞장섰다.

충남도의회 '의용소방대 역할분석을 통한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모임(대표 신한철, 이하 연구모임)'은 7일 천안서북소방서 대회의실에서 2차 회의를 개최하고, 의용소방대원 활동 사항에 관한 법규 및 조례 등을 검토 논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모임에서는 의용소방대원의 ▲ 자녀장학금제도 ▲소집수당 ▲피복개선 등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지적됐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모임을 통해 더 좋은 방안을 찾아가기로 다짐했다.

연구모임 대표를 맡고 있는 국민의힘 신한철(초선, 천안2) 의원은 “앞으로 사회변화 추세에 맞춰 다양한 전담의용소방대 추진해 가기로 한 만큼 조직문화개선을 위해 더욱 리더십을 발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면서 “의회에서는 관련 규정을 함께 개선해 나가는 한편 예산안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강조했다.

출처 : 뉴스티엔티(<http://www.newstnt.com>)



충남도의회가 의용소방대원의 다양한 대민 봉사활동과 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제도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도의회 '의용소방대 역할분석을 통한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모임'은 7일 천안서북소방서 대회의실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의용소방대원 활동 사항에 관한 법규, 조례 등을 검토 논의했다.

특히 이번 모임에서는 의용소방대원의 △자녀장학금제도 △소집수당 △피복개선 등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지적됐다. 이에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모임을 통해 더 좋은 방안을 찾아가기로 다짐했다.

신한철 의원은 “앞으로 사회변화 추세에 맞춰 다양한 전담의용소방대 추진해 가기로 한 만큼 조직문화개선을 위해 더욱 리더십을 발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며 “의회에서는 관련 규정을 함께 개선해 나가는 한편 예산안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김기룡 기자

press@shinailbo.co.kr

충남도의회, '의용소방대 활성화 방안 연구모임 2차회의 가져

신한철 대표의원, 소방대원의 봉사활동과 사기 진작 위한 제도방안 논의

[충청뉴스 권상재 기자] 충남도의회가 의용소방대원의 다양한 대민 봉사활동과 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에 앞장섰다.

출처 : 충청뉴스(<http://www.ccnnews.co.kr>)



도의회 '의용소방대 역할분석을 통한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모임'은 지난 7일 천안서북소방서 대회의실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의용소방대원 활동 사항에 관한 법규, 조례 등을 검토 논의했다.

특히 이번 모임에서는 의용소방대원의 ▲ 자녀장학금제도 ▲소집수당 ▲피복개선 등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지적됐다. 이에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모임을 통해 더 좋은 방안을 찾아가기로 다짐했다.

신한철 의원은 “앞으로 사회변화 추세에 맞춰 다양한 전담의용소방대 추진해 가기로 한 만큼 조직문화개선을 위해 더욱 리더십을 발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며 “의회에서는 관련 규정을 함께 개선해 나가는 한편 예산안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밝혔다.

출처 : 충청뉴스(<http://www.ccnnews.co.kr>)

[열공! 충남도의회] ⑤ 현장숨은 일꾼 의용소방대 활성화 하려면

“소방대원 전문성 강화 필요.....“ 적극성, 역할성 적극 홍보해야“

편집자 주 = 충남도의회 의원들은 11개 연구모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의원과 전문가, 공무원 등이 머리를 맞대 지역 현안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정책을 제안하거나 조례안을 마련하는 게 목적입니다. 연합뉴스는 연구모임 취지와 활동 내용, 정책 대안 제시, 입법화 과정 등을 소개하는 기획 기사를 매주 1건씩 12회에 걸쳐 송고합니다.



(홍성=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화재, 수해 등 재난 현장 곳곳에서 지역주민 등으로 이뤄진 '의용소방대'가 활약하고 있다.

충남 지역에서도 의용소방대가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전문성 강화 등 풀어야 할 숙제도 적지 않다고 한다.

이에 충남도의회는 관련 모임을 만들어 해법 모색에 나섰다.

1일 도의회에 따르면 신한철(천안2·국민의힘) 의원 등 도의원과 현직 의용소방대원, 소방본부 관계자들이 '의용소방대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에 참여하고 있다.

신 의원의 연구모임 발표 자료를 보면, 충남에서는 의용소방대 378개가 설치돼 대원 1만580명이 활동하고 있다.

화재진압, 구조·구급, 화재 예방 등 각종 소방활동을 보조하는 일반대, 화재 진압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화재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소방활동을 하는 전담대, 산악, 하천 등 지역 특수성에 따라 소방업무 관련 전문자격 소유자 등으로 구성된 전문대 등이 있다.

[열공! 충남도의회] ⑤ 현장숨은 일꾼 의용소방대 활성화 하려면



지난 6일 보령서 열린 충남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충남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의용소방대원들은 소방활동 보조뿐 아니라 화재 현장에서 교통 통제를 하거나 폭설이 왔을 때 제설작업을 하는 등 굵은일을 마다하지 않는다.

의용소방대는 지역봉사자의 역할도 한다.

사회복지시설에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보조하거나,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일손을 돕는다.

최근에는 결혼이민자 등을 의용소방대에 영입해 외국인 근로자나 다문화가정을 위한 통역 등 구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추세다.

신 의원은 의용소방대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대원의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용소방대원 가운데 소방 관련 자격증 소지자가 매우 적어 초기 재난 발생 대응에 한계가 드러난다고 한다.



지난 8월 공주에서 무연고 분묘 별초하는 반포면의용소방대원들

[공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문화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훈련이 필요하고, 소방력에 도움 되는 인력이 의용소방대에 가입할 수 있도록 목표와 명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게 신 의원의 의견이다.

최근 의용소방대원으로서의 사명감과 의무감이 약해져 존립 자체에 어려움을 겪는 곳이 많아, 의용소방대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했다.

연구모임에 참석한 의용소방대원은 소집 수당이나 의복 등 처우 개선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출동·진압 장비 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신 의원은 "관련 규정 개선과 예산안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남도의회가 의용소방대의 숭고한 봉사·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한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를 신설하고 직책 임명 기준 등을 정립하는 운영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이는 25일 열린 ‘의용소방대 역할 분석을 통한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모임’ 3차 최종 보고회에서 논의됐다.

도 의회에 따르면 이 연구모임은 지난 7월부터 시작해 약 4개월 동안 각종 재난·재해에 대응하는 의용소방대의 역할 분석을 통해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마련해 왔다.

안전한 지역사회 민간자율 봉사단체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것은 물론 도 의원과 지역 의소대원들이 함께 의견을 공유하며 토의해 왔다.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12월 중에는 연구모임 결과 보고서를 발간·배포하고 2023년 2월에 열리는 제342회 임시회에서는 ‘의용소방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조례를 통해 기념행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대원들의 봉사·희생정신을 기리고 숙련된 대원 직책 임명을 통해 조직 효율성 제고는 물론 단결과 결속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날 신한철 의원(천안2·국민의힘)은 “의소대는 크고 작은 소방 활동 현장에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사명감과 의용봉공 정신을 바탕으로 이뤄진 조직”이라며 “연구모임에서 조직 발전과 업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나온 만큼 조례 개정을 통해 소방대 활성화는 물론 대원들의 사기 진작에 일조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류석만 연합회장은 “이번 연구모임에서 토의됐던 내용이 조례 개정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박효숙 여성회장은 “충남의소대가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한 마중물이 되는 좋은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출처 : 충남일보(<http://www.chungnamilbo.co.kr>)

충남도의회 ‘의용소방대 설치 운영 조례 개정 추진.....’

신한철 의원, 의용소방대 활성화 방안 모색 연구모임서 추진

소방대의 날 행사 신설 및 직책 임명 기준 정립 등 대원 사기진작에 앞장



충남도의회는 25일 천안동남소방서에서 소방의용소방대 역할분석을 통한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모임 보고회를 열고 있다. 사진=충남도의회 제공

[내포(충남)=데일리한국 이정석 기자] 충남도의회가 의용소방대의 숭고한 봉사·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한 의용소방대의날 기념행사를 신설하고 직책 임명 기준 등을 정립하는 운영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이는 25일 열린 ‘의용소방대 역할분석을 통한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모임’ 3차 최종 보고회에서 논의됐다.

이 연구모임은 지난 7월부터 시작해 약 4개월 동안 각종 재난·재해에 대응하는 의용소방대의 역할 분석을 통해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마련해 왔다. 이를 통해 더 안전한 지역사회 민간자율 봉사단체로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함이었으며, 도의원과 지역 의소대원들이 함께 의견을 공유하며 토의해왔다.

이에 최종적으로 12월 중에는 연구모임 결과보고서를 발간·배포하고, 2023년 2월에 열리는 제342회 임시회에서는 ‘의용소방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조례를 통해 기념행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대원들의 봉사·희생정신을 기리고, 숙련된 대원 직책 임명을 통해 조직 효율성 제고는 물론 단결과 결속력을 강화해가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신한철 의원(천안2·국민의힘)은 “의소대는 크고 작은 소방 활동 현장에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사명감과 의용봉공 정신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조직”이라며 “연구모임에서 조직 발전과 업무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나온 만큼 조례 개정을 통해 소방대 활성화는 물론 대원들의 사기진작에 일조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류석만 연합회장은 “이번 연구모임에서 토의되었던 내용이 조례 개정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하고, 박효숙 여성회장은 “충남의소대가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한 마중물이 되는 좋은 기회였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충남도의회 ‘의용소방대 설치 운영 조례 개정 추진.....’

충남도의회는 25일 ‘의용소방대 역할분석을 통한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모임(대표 신한철)’ 3차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충남도의회 의소대 활성화 방안 연구모임.

이날 보고회에서는 의용소방대의 숭고한 봉사·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한 의용소방대의날 기념행사를 신설하고, 직책 임명 기준 등을 정립하는 운영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이 연구모임은 지난 7월부터 시작해 약 4개월 동안 각종 재난·재해에 대응하는 의용소방대의 역할 분석을 통해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마련해 왔다. 이를 통해 더 안전한 지역사회 민간자율 봉사단체로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함이었으며, 도의원과 지역 의소대원들이 함께 의견을 공유하며 토의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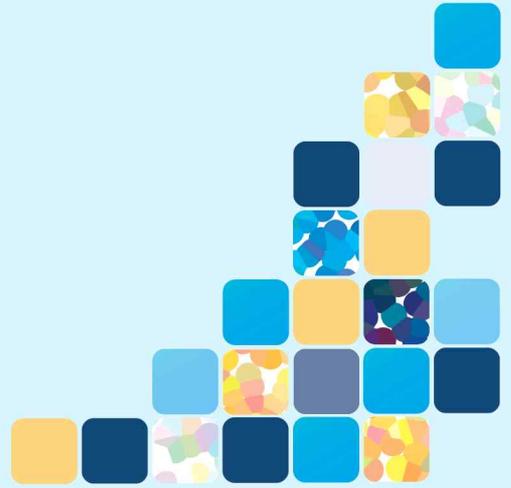
이에 최종적으로 12월 중에는 연구모임 결과보고서를 발간·배포하고, 2023년 2월에 열리는 제342회 임시회에서는 ‘의용소방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조례를 통해 기념행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대원들의 봉사·희생정신을 기리고, 숙련된 대원 직책 임명을 통해 조직 효율성 제고는 물론 단결과 결속력을 강화해가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신한철 의원(천안2·국민의힘)은 “의소대는 크고 작은 소방 활동 현장에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사명감과 의용봉공 정신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조직”이라며 “연구모임에서 조직 발전과 업무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나온 만큼 조례 개정을 통해 소방대 활성화는 물론 대원들의 사기진작에 일조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류석만 연합회장은 “이번 연구모임에서 토의되었던 내용이 조례 개정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하고, 박효숙 여성회장은 “충남의소대가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한 마중물이 되는 좋은 기회였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출처 : 충청뉴스(<http://www.ccnnews.co.kr>)



3

연구모임 결과

3 연구모임 결과

① 목적 및 필요성

1. (연구목적) 각종 재난·재해 및 소방업무를 보조하는 의용소방대원의 임무와 역할 등 설치 및 운영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여 자긍심을 고취 시키고자 함

2. 필요성

- 의용소방조직의 임무·역할등 활성화 방안 제시로 사기진작 모색 및 도정 시책에 반영
- 소방업무 보조 활동 및 복무·교육훈련 체계화 마련으로 조직 활성화 및 조직역량 강화

② 정책제언

1. 의용소방대 출동태세 및 진압장비 배치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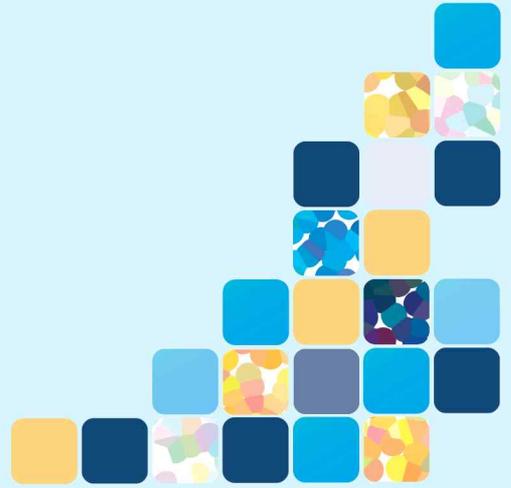
- 의용소방대 기동차량 도색(색깔) 공통 표준안 제작 추진
- 의용소방대 지역별 특성을 감안한 출동 및 진압장비 배치
- 의용소방대원 피복 재질·규격개선 및 우천 활동복 보급 추진
- 의용소방대(전담대, 지역대 등) 노후 청사 환경개선사업 지속 추진 등

2. 의용소방대 조직 활성화 및 사기진작 방안

- 의용소방대원 관련 자격증 취득자 성과급 반영 계획 추진
- 의용소방대원 신규 대원 모집 시 다양한 홍보 매체 활용 추진
- 의용소방대원 선진지 견학 시 소방공무원 포함, 선진국 방문 추진
- 대국민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등 교육·홍보 활성화 추진

3. 의용소방대 조직 역량 강화 및 자긍심 고취

- 조직의 명예를 심하게 훼손하는 경우 등 해임사유 추가 법개정 필요
-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를 추가하는 등 관련 조례 개정 추진
- 농촌지역 등 충원이 어려운 지역은 남·여 혼성의용소방대 설치 필요



4

연구모임 참고자료

4 연구모임 참고자료

① 위원명단(최종)

- 연구모임명 : 의용소방대 활성화 방안 연구모임
- 구성원 : 20명(의원 4, 전문가 16)
 - 대표 : 신한철 의원
 - 간사 : 나기영
 - 회원

구분	성명	소속 또는 상임위원회	비고
대표	신한철	충청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	도의원
회원	홍성현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도의원
회원	김도훈	충청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	도의원
회원	박정수	충청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도의원
회원	강성기	천안시의원	시의원
회원	김상식	소방본부 예방안전과장	공무원
회원	류석만	충청남도의용소방대 연합회장	의소대원
회원	박효숙	충청남도의용소방대 여성회장	의소대원
회원	박의호	천안동남소방서 병천남성대 대장	의소대원
회원	김종우	천안동남소방서 목천남성대 대장	의소대원
회원	이권재	천안동남소방서 동남의소방대 연합회장	의소대원
회원	정명희	천안동남소방서 동남여성대 대장	의소대원
회원	이재영	천안동남소방서 동남남성대 대원	의소대원
회원	문기식	천안동남소방서 동남남성대 총무반장	의소대원
회원	이완희	천안서북소방서 서북의소대 연합회장	의소대원
회원	박은숙	천안서북소방서 서북의소대 여성회장	의소대원
회원	박병환	천안서북소방서 입장남성의소대 총무부장	의소대원
회원	민지영	천안북자여자중학교 운영위원	민간위원
회원	이강자	천안프라임어린이집 원장	민간위원
회원	나기영	천안동남소방서 동남의용소방대원	의소대원

② 관련규정

충청남도의회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2000-11-10 훈령 제 29호
(전부개정) 2009-04-30 의회훈령 제 37호
(일부개정) 2009-07-28 의회훈령 제 38호
(일부개정) 2009-11-05 의회훈령 제 39호
(일부개정) 2011-01-18 의회훈령 제 42호 충청남도의회 사무의 위임전결 규정 일부개정규정
(일부개정) 2011-03-16 의회훈령 제 43호
(일부개정) 2013-04-10 의회훈령 제 44호
(일부개정) 2014-06-20 의회훈령 제 47호
(일부개정) 2016-09-12 의회훈령 제 50호
(일부개정) 2018-12-10 의회훈령 제 53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충청남도의회의원이 지방자치발전과 충청남도 도정발전을 위한 정책에 대한 연구를 위하여 연구모임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충청남도의회의원 연구모임(이하 “연구모임”이라 한다)이란 충청남도 및 충청남도교육청 소관업무중 특정의 관심분야에 관한 자치입법 또는 정책의 연구·개발 등을 위하여 충청남도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등이 연구모임을 구성하고 충청남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등록된 연구모임을 말한다.<개정 2011.03.16>

제3조(구성) ① 연구모임은 의원 3명 이상과 교수 등 전문가를 합하여 20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의원이 아닌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성한다.<개정 2011.03.16, 2013.4.10., 2018. 12. 10>

1. 대학교수 또는 관련분야에서 연구 개발에 종사하는 전문가
2. 충청남도지사가 설립 출자·출연한 법인의 임직원
3. 유관기관 단체의 임직원과 관련분야에 식견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위와 같은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연구모임의 대표는 의원이 하고, 의원이 아닌회원 중 1인을 간사로 하되 간사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 계획서, 제12조제1항의 연구활동중간보고서 및 제12조제2항의 연구활동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개정 2016.9.12>

③ 삭제 <개정 2018.12.10>

④ 연구모임 명칭은 연구모임 앞에 연구분야 또는 과제명을 붙여 사용하며, 주제는 대표의원 소속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 범위내에서 선정한다.

⑤ 연구모임은 등록취소가 되지 않는 한 당해 연구모임에 소속된 의원의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 활동한다.

제4조(연구모임의 등록) ① 의원이 제3조에 따라 연구모임을 구성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연구활동계획서를 첨부하여 충청남도

의회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7조제2항에 따라 심의결과 보고서에 등록부적격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의장은 연구모임의 등록을 할 수 없음을 대표에게 통보해야 한다.<개정 2011.03.16>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 및 활동계획서가 접수되면 제6조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의원연구모임등록서를 해당 연구모임에 통지하며, 제3항에 의해 대표의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연구모임등록서를 변경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 9. 12>

③ 의회에 등록된 연구모임(이하 "등록연구모임"이라 한다) 대표는 연구모임에 소속된 의원 또는 대표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지체 없이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연구모임 의원변동신고서를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개정 2016. 9. 12>

④ 연구모임 등록사무는 입법정책담당관이 보좌한다.<개정 2011.01.18>

⑤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연구모임을 등록할 수 없다.
<신설 2014.6.20 >

- 1.연구주제·목적이 달성이 어렵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2.연구주제·목적이 극히 일부지역에 한정되거나 도정발전에 배치되는 경우
- 3.제3조에 따른 연구모임 구성이 미비한 경우
- 4.그 밖에 심의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 <삭제 2011.3.16>

제6조(심의위원회) ① 연구모임 등록 및 연구활동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의회에 충청남도의회의원 연구모임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의 직무는 의회운영위원회가 대행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의회 기본 조례」 및 「충청남도의회 회의 규칙」에 따른다.<개정 2016. 9. 12>

④ 심의위원은 본인이 소속된 연구모임을 심의할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스스로 회피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때에는 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의원을 그 회의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신설 2014.6.20>

제7조(심의위원회의 기능) 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모임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연구과제 등의 조정 및 연구활동계획서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연구활동비의 배분·회수·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연구활동결과 및 연구활동비 정산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연구모임 활동에 관한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제1호와 제3호에 따른 연구모임 등록을 심의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의원연구모임 등록 및 활동계획 심의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07.28.>

제8조(연구활동비의 지원 등) ① 의장은 등록연구모임에 대하여는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중 일부를 연구활동비로 지원할 수 있다.

② 등록연구모임이 연구활동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연구활동비 지원신청

서를 의원연구모임등록서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연차 연구모임일 경우에는 다음연도 1개월 이내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 9. 12>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연구모임당 연간 500만원의 범위에서 연구활동비를 지급하되, 활동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 300만원 범위에서 지급한다. 다만, 심의위원회는 연구의 성격,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배정된 의정운영공통경비 범위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9. 12>

④ 제2항에 따라 등록연구모임에 지원하는 연구활동비는 연구활동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말하며, 경비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활동에 따른 자료수집비, 여비, 수용비, 급식비 등과 그 밖의 경비
2.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회의비, 강사료, 전문가 자문경비 등과 그 밖의 경비

⑤ 연구활동비는 연구모임의 연구활동계획 및 전년도 연구활동 결과에 대한 평가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급할 수 있다.

⑥ 삭제 <2009.07.28>

제9조(연구활동비의 집행 등) ① 연구활동비는 제8조제3항의 지원 범위에서 연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집행해야 한다.

② 연구활동비를 지급받은 연구모임은 승인된 연구과제 이외의 활동이나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③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미 지급한 연구활동비를 회수하거나 삭감할 수 있다.

1. 제1항·제2항 및 제5항을 위반한 때
2. 연구활동 중간보고서와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연구활동비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13.4.10.>
3.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연구모임 등록이 취소되었을 때
4. 연구활동결과보고서의 내용이 연구활동계획서의 내용에 현저히 미달할 때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④ 연구모임은 연구활동비 범위에서 해당분야 전문가를 활용하되, 전문가에 대한 자문경비는 연구활동비를 활용해야 한다.

⑤ 연구활동비의 지출기준은 「충청남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르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 충청남도 일반회계를 따른다.

⑥ 연구모임의 연구 활동기간 동안 자료정리와 의정활동비 관리 및 지출 등을 위하여 연구모임 등록 당시의 대표가 소속된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이 업무를 지원한다. <개정 2009.07.28, 2011.03.16>

제10조(연구계획의 변경 등) ① 연구모임은 연구활동중에 연구계획서의 연구과제 및 중요한 사항 등을 변경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구계획서의 연구과제 및 중요한 사항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연구활동계획 변경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연구모임의 활동계획에 변경이 있을 경우 의장은 그 연구활동비를 그 지원 범위에서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다.

제11조(연구활동기간) ① 연구모임의 연구활동기간은 의장이 제4조제2항에 따른 의원연구모임등록서를 통지한 날부터 시작되며, 당해 연도 사업은 11월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09.11.05, 2014.6.20>

②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에는 임기만료일 전 5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09.07.28>

제12조(연구활동결과보고서 등)<조 제목 개정 2013.4.10.> ①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은 연구모임은 연구활동중간보고서를 매년 7월31일 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선거에 의하여 의원의 임기가 새로 시작되는 연도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6. 9. 12>

②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은 연구모임은 연구활동이 종료되면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연구활동결과보고서와 별지 제9호 서식의 연구활동비정산서를 각 15부씩 작성하여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에는 임기만료일 전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09.07.28, 개정 2013.4.10.>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연구활동결과보고서와 연구활동비정산서에 대하여 심의위원회 승인절차를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개정 2013.4.10.>

제13조(연구모임 등록의 취소) ① 의장은 등록연구모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심의위원회의 승인 없이 연구과제 및 연구내용을 변경한 경우
2. 승인된 연구과제 외의 연구활동 또는 그 밖의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한 경우
3. 제12조에 따른 연구활동결과보고서 및 연구활동비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② <삭제 2011.03.16>

제14조(세부사항)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연구활동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의회훈령 제37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의회훈령 제38호)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규정 시행 전에 심의 등록된 충청남도의회 연구모임은 이 규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본다.

부칙 (의회훈령 제39호)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규정 시행 전에 심의 등록된 충청남도의회 연구모임은 이 규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본다.

부칙 <충청남도의회 규정 제42호, 2011.01.18>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112호 시행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① 충청남도의회자료실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남도의회자료실운영규정” 을 “충청남도의회 자료실 운영 규정” 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제7조제1항, 제10조제2항 중 “법제자료담당관” 을 “입법정책담당관” 으로 한다.
② 충청남도의회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법제자료담당관” 을 “입법정책담당관” 으로 한다.

부칙<충청남도의회 훈령 제43호, 2011.03.16>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규정 시행 전에 등록된 충청남도의회 연구모임은 이 규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본다.

부칙(충청남도의회 훈령 제44호)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규정 시행 전에 등록된 충청남도의회 연구모임은 이 규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본다.

부칙<충청남도의회 훈령 제47호, 2014.6.20>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충청남도의회 훈령 제50호, 2016. 9. 12>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충청남도의회 훈령 제53호, 2018. 12. 10>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